

제1장 복지정책

□ 관련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 1,800명 정도
- 지원금액: 월 20만원(시비70%, 구비30%)
- 지급시기: 매월 25일

□ 보훈예우수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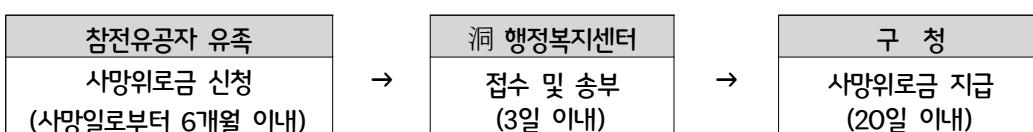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대상: 65세이상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족 650명 정도
- 지원금액: 월 10만원(시비50%, 구비50%)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참전명예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 절차

- 市: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계획 ▶ 匾: 지급대상자 거주 여부 및 계좌 확인 ▶ 복지정책과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유족
- 지원금액: 10만원(구비)
- 지원절차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본인 및 배우자) 55명 정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 지원금액: 가구당 연간 150만원(시비) ※ 비급여 의료비 제외
- 신청방법: 區 해당부서(복지정책과)에 구비서류 제출 시 (연중접수)
 - * 구비서류: 의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독립유공자 및 유족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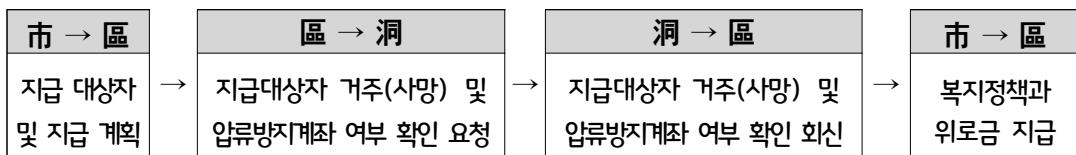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원(구비100%)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독립 유공자 (선순위)유족 85명 정도
- 지원금액: 10만원
- 지급시기: 3.1절, 광복절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시비100%)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250명 정도 ※ 중위소득 70%이하
- 지원금액: 25만원 ※ 市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급시기: 3.1절, 광복절

■ 3.1절·광복절 유족위문금 및 (손) 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절차



※ 지급대상자 명단은 대구지방보훈청 자료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수수료 감면 지원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
- 지원내용(구비 100%)
 - 종량제 봉투: 분기별 1인당 90ℓ(분기별)
 - 음식물 납부필증(주택/분기별) 및 음식물 수수료 감면(아파트/매월)

□ 보훈단체 지원

- 지원근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지원내용
 -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 6.25기념행사, 보훈시설 환경정화활동, 보훈정신함양사업, 찾아가는 안보교육 등
- 달서구 보훈단체 현황: 10개 단체(p.239 참고)
 -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달서구재향군인회

□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근조기)사업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3 및 제7조의 2
- 지원내용
 - 기 간: 연중
 - 대 상: 달서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장례식장이 대구시 내 소재)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 혁명유공,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등
- 주요내용: 달서구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区 근조기 근정 지원 활동
- 보조단체: 달서구재향군인회(623-0255)

□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운영

- 사업기간: 2025.4.~12.
- 사업대상: 달서구 관내 초·중·고학생 등 청소년 300명 정도
- 모집방법: 관내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 및 신청자 중 선정
- 사업내용: 대구 및 근교 보훈(현충)시설 등을 탐방·체험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6, 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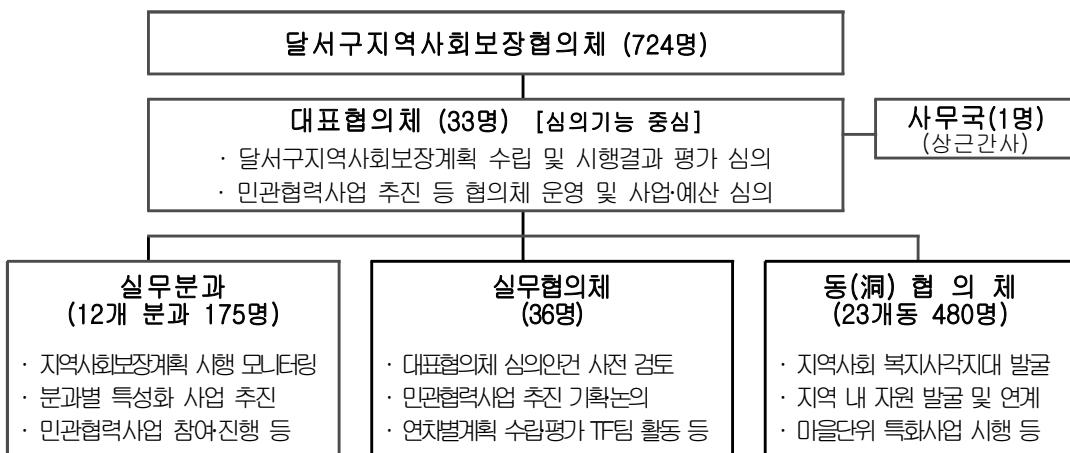
□ 목 적

-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

- 협의체 구성

(2024. 12. 31. 기준)



-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문역할 및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및 심의 등
- 실무분과별 특화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등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 정기회의: 대표협의체(연 3회 이상), 실무협의체(연 6회 이상), 실무분과(연 6회 이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사업

○ 동산병원과 함께하는 「달서구민 건강UP」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5. 3. ~ 2026. 2월
- 지원대상: 10명 정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
- 지원내용: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주민의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0만원)
- 사업비: 연간 20,000천원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후원금 15,000천원, 구비 5,000천원

○ 어르신 의료(당뇨) 사각지대 발굴 및 치유활동

- 지원기간: 2025. 2. ~ 10월
- 지원대상: 달서구재가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당뇨어르신 320명 정도
- 지원기관: 16개소(맞춤형돌봄서비스 제공기관 7, 주·단기보호시설 5, 종합사회복지관 1, 기억학교 3)
- 지원내용
 - 당뇨교육: 당뇨병관리 · 식생활 관리 · 발 관리법 교육
 - 운동교육: 일상생활 속 간단한 운동교육
 - 당뇨식 지원: 당뇨 밑반찬 5종 지원
 - 정기적인 당뇨측정(주1회 실시) 및 당뇨보조식품 지원
- 사업비: 40,000천원(구비100%)

□ 기능(심의 또는 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과정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 자문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 강화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5년 대구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안내(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접수방법

- 신 청 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 서비스별 증빙서류 상이함.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주요내용

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사업)

①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연 령: 만 1~6세(2019~2024년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내 용: 유아기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감소

②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 연 령: 만 4~13세(2012~2021년생) 아동 · 청소년
- 소 득: 없음(기준 중위소득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반영)
- 내 용: 좌·우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운동능력 · 인지 · 학습 · 정서문제를 아동 · 청소년에게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체활동 지원

③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편편(Fun, Fun) 한 맘

- 대상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초 · 중 · 고 자녀를 둔 부모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내 용: 부모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④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지킴이”

- 연령: 만 65세 이상 노인(1960년 이전 출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내용: 노인 정서치유(대중음악, 미술 등)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⑤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

- 대상자: 만 12세 이상(2013년 이전 출생자) 알콜·약물·도박중독, 기타 행위 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내용: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역량강화, 위기개입 및 지역연계 등

⑥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대상자: 만 24세 이하(2001년 이후 출생자)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내용: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보수 등

⑦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대상자: 만 18세 이하(2007년 이후 출생자)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내용: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 서비스, 부모상담, 언어, 놀이 미술, 심리상담, 음악프로그램 등

⑧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 대상자: 만 7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인 자녀를 둔 가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내용: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

⑨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 대상자: 만 15세 이상(2010년 이전 출생자)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내용: 정신건강 및 자기개발 서비스제공 및 집단 활동

⑩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대상자: 만 60세 이상(1965년 이전 출생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만 19세 이상(2006년 이전 출생자)의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내용: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제공

⑪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腦) 인생”

- 대상자: 만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자)인 자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내용: 노인의 신체·인지 향상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⑫ 초등 사회성·인지향상 프로그램 “나무늘보”

- 대상자: 초등학교 1~6학년(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이 속한 초등학교 재학생 가구)
- 소 득: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내용: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 및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 증진 도모

⑬ 노인 “DHA 주산 뇌운동” 프로그램

- 대상자: 만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자)인 자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내용: 노인의 신체·인지 향상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도모

I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개사업)

①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 대상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91~2006년생)
- 욕구기준: BMI(신체질량지수) 23 이상 또는 18.5 미만, 신체균형검사 등
- 소 득: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목 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 삶 제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질병,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
-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지원, 신체 건강증진)
 - 기본서비스(월 24시간~72시간 중 선택), 특화서비스(최대 2개 선택)
-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기 본 서비스	재가돌봄	돌봄 및 신체·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
	동행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 화 서비스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신체건강증진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이용기간: 6개월(재판정 5회까지 가능, 최대 3년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3. 7월 ~
- 신청자격: 달서구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만15 ~ 65세)
- 소득재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 지원내용: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일48,150원, 1년 최대 150일까지 지원 (예. 21일 입원 시, 14일 지원)
- 신청방법: 참여의료기관 방문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 상병수당 신청(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 심사
 -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 참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및 대구달서지사 연락처 (☎ 053-620-7240~7243) 참조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 기관별 역할

- 의료기관
 - 환자에게 상병수당 제도 안내, 의료기관에 홍보물 등 배포 · 안내
 -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발급
 - 진단서 비용 등: 진단서(비용: 2만원, 신청인에게 비용 환급)
연구지원수당(진단서 발급 환자 1인당 5만원 지급)
- 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 신청 · 접수
 - 신청자 자격(취업 여부 등) 등 자격심사, 수당 지급
- 지자체(복지정책과)
 - 참여의료기관 등록 독려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상시): 고지서 홍보, 포스터, 리플렛, SNS 등

□ 관련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노숙인 등” 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 기초 생활수급자는 주거가 일정한 자로 보아 노숙인으로 판단하지 않음.

□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을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 귀향 여비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급 결정
- 연고자가 없을 경우
 - 노숙인 등의 의사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의뢰하여 쉼터 입소
 - 쉼터 입소 시 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의 장이
 -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
 - 노숙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응급환자일 경우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 인계서』를 작성하여 119구급대 등을 이용하여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여 입원조치
 - ※ 신원확인 불가 시 경찰관에게 의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행려사망자 처리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화장 후 공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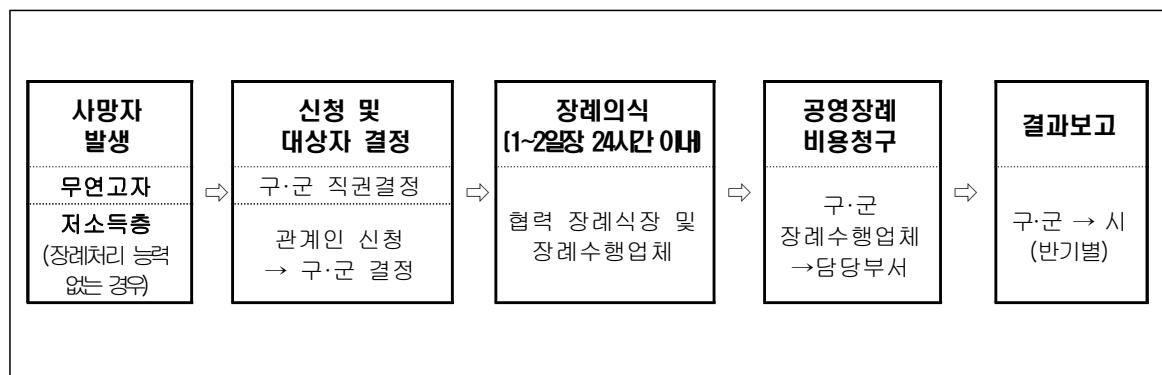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 무연고 사망자 처리

- 대상: 사망자가 무연고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절차
 - 경찰서 담당자는 검사 지휘를 받아 시체가 현존하는 관할 구청에 처리 요청
 - 병원 및 시설 관계자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 및 구청에 처리 요청
 - 연고자가 없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5년) 후 공고(30일)
 -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관내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공영장례 지원비(장례용품, 장례음식, 빈소 임대료 등) 1인 800천원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관련근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선정기준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준 적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광역(기본재산액 7,7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 조사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부양능력 유무 등

지원내용

법정급여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교육급여대상자 중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 1명당 487천원 - 중등: 1명당 679천원 - 고등: 1명당 768천원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보장 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 - 정부양곡 신청가능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현금→바우처)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정부양곡신청가능

※ 타제도 지원내용: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 가능

○ 감면제도

지원 내용	비고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区에서 일괄 면제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6 ~ 8월 20,000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6 ~ 8월 12,000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 행정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복지전화서비스 <p><유선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내료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p><이동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 주거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p><인터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업체에 신청 <p>※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감면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p>

지 원 내 용	비고
<p>□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7세 이하 영유아 해당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이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 행정복지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상담서비스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p>□ 도시가스요금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p>□ 문화누리카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p>□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p>□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kotsa.or.kr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3조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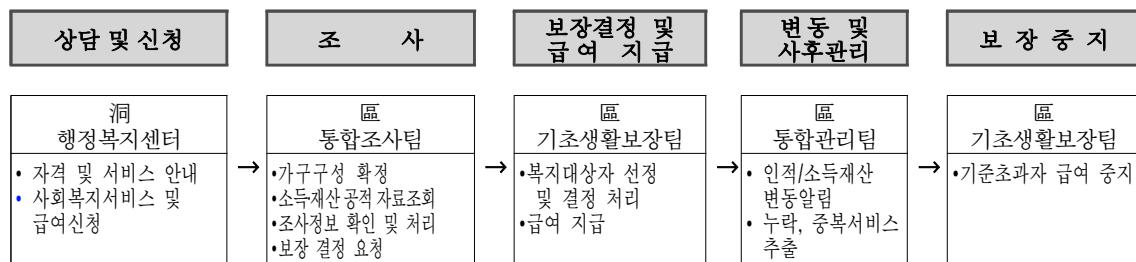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지원내용
 - 행복지급여(매 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25% 수준
 - 해산급여(필요시): 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필요시): ↗ (1구당 80만원)
 - 동절기난방비지원: 연 2회(1월, 11월), 1가구당 10만원/회
(※ 에너지바우처 등 타법령·타제도에 의해 난방비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 후 지급, 동절기 난방비 금액 이상의 타지원을 받는 경우 미지급)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대상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및 급여액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래의 차상위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및 탈시설 자립정착 가구
- 재산기준(선정제외)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2억원(세전) 초과 또는 일반재산 10.8억원 초과시 제외
- 가구원수별 급여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급여액	191,370	314,620	402,030	487,830	568,660	645,190

처리절차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주요내용

- 지원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지원기준: 장애 종별 및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담당 의사가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내구연한 내 지급 가능
- 지원금액: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금액 100% 지급

처리절차

- 보조기기 처방(의료기관, 처방전) → 수급자격 결정 신청(대상자 ⇒ 洞 또는 區) → 보장기관의 수급 자격 여부 판단 신청자에게 통보(區 ⇒ 대상자) → 보조기기 구입(판매·제조업소,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검수(의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 지급 신청(대상자 ⇒ 區) → 구입비용 지급 결정 및 통보(區 ⇒ 대상자)
- 구비서류
 - 수급자격 결정 신청: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자료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 구입비용 지급 신청: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망원경은 검수확인 생략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202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단, 만성질환인 알콜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은 제외

□ 주요내용

- 지원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연 1회 500천원 한도
- 지원제외 항목: 비급여 중 식대, 상급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 지정병원: 35개소
 -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구병원, 세강병원, 보훈병원, 대구의료원, 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늘열린성모병원, 굿모닝병원, 신라병원, 우리병원, 성서한미병원, 서대구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보강병원, 성서병원, 미래여성병원, 해성병원, 대구참조은병원, MS재건병원, 보광병원, 베델병원, 파티마병원, W(더블유)병원, 광개토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문성병원, 푸른병원,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창한방병원, 새동산병원, 과병원

※ 2,3차 의료기관 요청 시 수시 지정(지정동의서 청구) -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에 한함
- 지원신청: 입원 중 신청하며, 지원 결정 전 퇴원 시 지원불가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洞) → 담당자 실태조사 → 무료진료비 지원 요청 → 결과통보(洞, 진료기관) → 병원에서 진료비청구 → 진료비 지급(區 복지정책과)

12

재가 의료급여 사업

❖ 기초생활보장팀

☎ 3574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5조

지원대상

-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퇴원 후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지원 제외

주요내용

-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 필요도 평가 → 케어플랜 수립 → 서비스 제공 · 연계
→ 모니터링 → 종결
- 지원기간: 1년(필요 시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필요도 평가에 따라 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생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예산 지원: 월 평균 716,500원 한도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8조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주요내용

○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지급대상 및 요건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 지원금액: 초과금액의 50% 보상(2천원 미만 지급 제외)

○ 본인부담금 상한제

- 지급대상 및 요건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지원금액: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2천원 미만 지급 제외)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급대상 및 요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 제한자 제외)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매월 1일 수급권자별 자격정보에 생성)
- 잔액지급: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사망자, 잔액 2천원 미만자 제외)

□ 처리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기관으로 지급대상 내역 발췌하여 행복이음 제공(수급권자 청구절차 생략)
→ 区 제공자료 확인 → 수급권자 계좌 입금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주요내용

- 지원기간: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 ~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이며, 지원기간 경과 후 사용잔액은 자동 소멸
-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태아당 100만원 지원
※ 2024. 1. 1. 이후 다태아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태아당 100만원 지원
(종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지원)
- 입원 · 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수급권자의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지원기간 중 자격변경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 잔액 정산 후 임산부에게 계좌 입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방문(洞), 온라인(복지로)) → 洞 확인 및 접수
→ 區 건강보험공단 전송 → 전송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 · 출산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소견서(다태아인 경우 태아수 포함))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요내용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10,420원/일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 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회 투여	900원/일
	1일 인슐린	2회 투여	1,800원/일
	투여횟수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금액: 제품별 사용가능 일수 × 일당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만19세 미만*	11,000원/일
	전 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자	10,000원/일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나이는 처방일 기준

○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지원(간헐적 도뇨 카테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9,000원/일(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 산소치료 지원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금액: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택 1)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⑦, ⑧ 중 하나 선택)	⑦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일반(실리콘 튜브 포함)	14,500원/개
	⑧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125,000원/개
		겔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72,000원/개
		겔	148,000원/개

※ 기본 소모품: 세트 1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
세트 2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

○ 기침유발기 지원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금액: 160,000원/월

○ 양압기 지원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금액: 76,000원/월(지속형), 89,000원/월(자동형), 126,000원/월(이중형), 95,000원/연(마스크)

□ 처리절차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洞), 온라인(복지로)) → 区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의료기기 판매업소, 수진자)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적용대상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결핵 포함) 365일, 11개 만성고시질환 380일, 그 외 기타 질환 400일)를 초과하여 진료받아야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요내용

-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
- 연장승인신청서는 수급자의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계속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구체적인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질환군별 연장승인: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결핵 포함)은 9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만성 고시 질환은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기타 질환은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 가능(총 545일)
- 조건부 연장승인: 선택 병의원을 정하여 집중 관리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 일수 455일을 초과하는 경우
 - 11개 만성 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 수 455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질환으로 급여 일수 545일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제출
- 区(복지정책과)에서는 연장 사유 기재 사항을 검토 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심의 결과를 토대로 급여 일수 연장승인 조치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마목, 2호마목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요내용

- 급여대상: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수급자 5%, 2종수급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7년에 1회 적용, 시술종료 후 7년이 지나면 재신청 가능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발급요청(대상자) → 틀니등록신청서 발급(의료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신청대행 또는 보장기관(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 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 원본 송부(洞→區) → 중복급여여부확인 후 틀니대상자로 적합 등록(區) → 행복이음 등록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區) →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 시술 시작(대상자)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마목, 2호바목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주요내용

- 본인부담: 1종 수급자 10%, 2종 수급자 20%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발급요청(대상자) → 진단후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발급(의료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신청대행 또는 보장기관(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 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 원본 송부 (洞→區)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區) → 행복이음 등록사항 공단 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區) →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시술 시작(대상자)

□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적용대상

○ 시조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구조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2024년과 동일)

□ 주요내용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처리절차

- 지원대상가구 선정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 구청
- 사실조사 및 결과 보고 :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 자격취득 여부 등), 사망, 전출 등 조사
- 지원대상자 조사결과 통보: 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 보험료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 구청
- 보험료 지급: 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관련근거: 2025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농림축산식품부) **추진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세대 중 정부 양곡 희망자

- 신청 및 공급시기
 - 신청: 매월 1~10일(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공급(배달): 매월 21일~의월 5일(공급희망지로 택배 배달)

- 공급가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1포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포 10,000원

- 신청 상한량
 - 1인 10kg 기준(4인 가족 기준 최대 40kg까지 구입 가능)
 - 4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추가 구매 가능
(5인/50kg, 6인/60kg 등)

-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21

대구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팀

☎ 3576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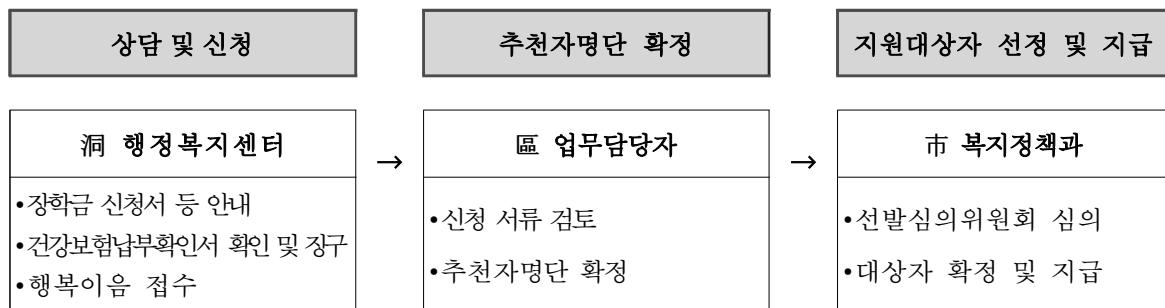
□ 사업목적

-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대 구 시
신 청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 적용)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휴학 중인 자, 학비면제자/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 정규학기 초과 등록 재학생/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제외
지 원 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1인 최대 200만원
신 청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신 청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학생 본인 명의) · 장학금(수혜· 미수혜) 확인서 및 서약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상위 순, 저소득 순으로 선발
문 의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복지정책과 (☎803-3973) · 달서구 복지정책과 (☎667-3576)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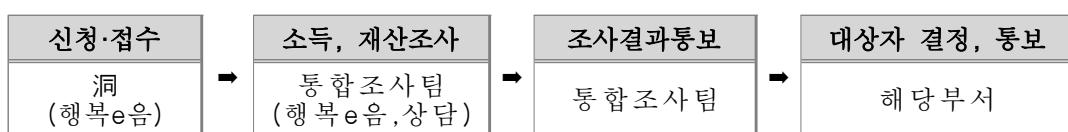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7조, 제19조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기타관계인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시기: 연중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기타 제출 요구 서류
- 조사분야: 총 34개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분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장애인·기초연금, 영구임대주택,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외 27개 사업)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공적자료 적용 및 방문상담 조사



※ 25개 기관 94유형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현황 활용

□ 업무처리절차

	접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공적자료 요청 (2일~3일)							
주택조사 회신 (20일 이내)							
근로능력평가 회신 (30일 이내)							
금융조회 회신 (3주 이상)							
담당자 방문 상담							
보장결정 요청 (30일 이내, 연장 60일)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7조, 제19조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

- 목 적: 최근 개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 대 상: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 ※ 13개 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타법 의료급여(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초중고교육비 지원
- 내 용: 기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관리 및 보장결정 요청, 신규 보장 결정된 복지대상자 급여 관련 자료 확인·정비
- 조사 종류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 기												
월 별												

- 자체 확인조사(본인신고 및 공적 미연계 자료)
- 수시 변동 확인조사(행복이음 변동처리 알림 통보)
- 기타 조사
 - 인적정보 변동자료 정비: 연 2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재산 조사 여부 정비: 연 2회

○ 조사 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및 반영
 - ※ 25개 기관 208종 94유형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제2장 어르신장애인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적용대상: 281개 등록경로당

- 구 소유 71개소, 민간 210개소(아파트 205, 일반지역 5)

주요내용

- 경로당 설치신고 수리,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시설물 점검
- 구 소유 경로당 유지·보수 등

운영비 등 지원

- 운영비

구 분	A등급 (월 210천원)	B등급 (월 200천원)	C등급 (월 190천원)	등급산정방법	비 고
구 소유 및 주택가 경로당	80점 이상	80점 미만		(등록인원+이용인원+ 면적)/3	분기 지급
아파트경로당		200세대 미만	200세대 이상	세대별 수	
복지관 경로당	월 19만원 지원			3개소	

- 난방비

구 분	66㎡ 이하	67 ~ 132㎡ 미만	132㎡ 이상	비 고
기름보일러	월 260(연1,300)	월 280(연1,400)	월 300(연1,500)	5개월 (1 ~ 3, 11 ~ 12)
도시가스	월 220(연1,100)	월 230(연1,150)	월 240(연1,200)	✓

- 냉방비(구 소유): 연 300천원

시설 유지·보수

- 대 상: 등록된 구 소유 경로당
- 방 법: 소규모 보수는 동에서 보수시행, 시설 대수선 및 규모가 큰 보수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직접 시행

경로당 등록절차

- 신고서 작성(회칙, 명부 등 첨부) 어르신장애인과 제출
- 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시설 확인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시설현황

구 분	소 재 지	규 모	시설장	위탁단체	설 치 일 (전화번호)	비 고
달서구노인 종합복지관	학산로 140 (본동)	연면적 4,588m ² (지하 1층, 지상 3층)	김진홍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05. 5. 9. (644-8310)	
두류은빛 복 지 관	두류길 141-8 (두류동)	연면적 644m ² (지상 4, 5층)	"	"	'22. 1. 1. (623-8310)	분관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선원로 203 (용산동)	연면적 3,846m ² (지하 1층, 지상 3층)	조재경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15. 5. 28. (721-8081)	
월성은빛 복 지 관	월성로 77 (월성동)	연면적 414m ² (지상2층)	"	"	'23. 8. 30. (721-7253)	분관

□ 이용대상: 60세 이상 달서구 거주 노인

□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이용시설
 - 대강당, 탁구장, 교양강좌실, 도서실, 서예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노래방 등
-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기능회복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등

□ 이용방법

- 어르신장애인과: 시설이용 안내
- 노인종합복지관 직접 방문: 이용희망 시설이나 참여 프로그램 상담 후 이용 결정

□ 2025년 예산액 : 2,617,878천원(시비 1,179,266 구비 1,438,612)

-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1,400,886천원(두류은빛복지관 포함)
- 성서노인종합복지관 : 1,216,992천원(월성은빛복지관 포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 노인대학 개요

- 시설현황

구 분	소 재 지	개 설 학 과	정원	종사자 수	총장	위탁 단체	설 치 일 (전화번호)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선원로 203(용산동)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내)	4개 학과	100명	2명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99. 11. 17. (721-8081)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학산로 140 (달서구노인 종합복지관 내)	4개 학과	120명	2명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05. 5. 11. (644-8310)

- 모집대상

- 노인문화대학: 60세 이상의 성서권역 거주 노인
- 노인복지대학: " 월배권역 거주 노인

- 선발방법: 매년 1월 신청서 접수·선발

- 교육기간: 1년 과정

- 학 과: 4개학과

- 인문학과, 전문상담과, 지역문화유적학과, 시니어봉사과

- 운영방법

- 전공별 강의는 대학교수 및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로 공개 모집·운영
- 지역사회 이용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관련근거 및 운영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설현황

소재지	규모	참여인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기관	설치일 (전화번호)
성당로47안길 49 (두류동)	402㎡ (지하1, 지상3층)	3,333명	7명	최병삼	가정복지회 (보건복지부지정)	'04. 10. 21. (626-8310)

□ 주요사업 내용

- 노인공의활동사업(11개월): 13개 사업단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지하철안전지킴이, 추모공원지킴이, 복지시설도우미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10개월): 18개 사업단
 - 즐거운생활복지지원사업단, 행복맞춤도우미사업, 스마트경로당활동지원사업 등
- 공동체사업단(연중): 10개 사업단
 - 백세기획, 백세상회, 백세봉제, 할미카페, 스팀세차 등
- 취업지원(연중): 취업상담 및 연계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사업 운영(특화사업)
 - 전문성을 가진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발굴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단순참여형 노인일자리에서 탈피

□ 2025년 예산액

- 시니어클럽 운영: 529,822천원(시비 433,054, 구비 96,768)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7,439,708천원(국비 8,719,854 시비 8,719,854)

관련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참여기관: 6개 기관 5,773명

- 구 청: 910명(지원봉사활동 86, 거리환경지킴이 602, 청소년선도순찰대 40, 경로당 환경개선도우미 142, 달서클린업출동대 40)
- 대구달서시니어클럽: 3,333명(노인공익활동사업 1,750, 노인역량활용사업 1,157, 공동체사업단 290, 취업지원 136)
-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590명(노인공익활동사업 490, 노인역량활용사업 100)
- 성서노인종합복지관: 590명(노인공익활동사업 490, 노인역량활용사업 100)
- 월배노인복지센터: 180명(노인공익활동사업)
-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 170명(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대상

- 신청연령: 65세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단,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 신청자격: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에 한하여 참여 가능

운영방법

구분	참여기간	활동(근무)시간 (월)	활동비 (월)	부대경비 (연)	합계 (연)	비 고
노인공익활동사업	평균 11개월	30시간	290천원	180천원	3,370천원	
노인역량활용사업	10개월	60시간	634천원	2,124천원	8,464천원	주휴 및 연차수당 연 1,585.5 천원 포함
공동체사업단	연 중	자체 운영규정		2,670천원	2,670천원	
취업지원	연 중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150천원	150천원	

2025년 예산액: 26,935,028천 원(국비 50%, 시비 50%)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 수행기관(7개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재가노인돌봄센터, 월성재가노인돌봄센터, 굿실버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23명, 생활지원사 379명

□ **서비스대상:** 5,677명 정도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서비스 이용자

□ **사업기간:** 연중

□ **서비스내용**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 연계서비스: 주거환경개선, 흑서기 및 흑한기 물품 지원, 문화체험 지원 등

□ **이용자 부담:** 무료

□ **처리절차**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수행기관에서 사회·신체·정신영역으로 선정조사 실시, 서비스 상담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
-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2025년 예산액:** 8,444,170천원(국비 70%, 시비 30%)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지도원수:** 290명 정도

□ **위촉 및 해촉**

○ **위 촉**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많은 경로당 회장을 위촉하고 그 기간은 해촉 시까지로 한다.

○ **해 촉**

- 질병 · 부상 · 전출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시 또는 품위를 손상한 때
- 경로당 회장직에서 퇴임한 때

□ **근무방법:**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활동

□ **주요 활동내용**

-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역할 수행
- 시설 내·외부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화
- 보안등,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 보수사항 점검
- 기타 노인복지정책 홍보 및 안내 등

□ **처리절차**

- 이력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청
- 동장은 위촉대상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구청에 추천
- 위촉 및 지역봉사지도원증 발급
- 봉사활동 실시, 활동점검 및 분기별 활동비 지급(1인 월 50천원)

□ **2025년 예산액:** 174,000천원(시비 13,500, 구비 160,500)

관련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달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10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지급금액:** 분기별 50천원

 부양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중지 사유**
 -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
 -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 **지급중지 시기:** 지급중지 사유 발생한 다음 분기부터 중지
- **지원금 환수사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 **환수시기:** 행위요인이 발생한 분기부터
- **환수금액:** 환수시점부터 지급된 지원금 전액
- **환수불용 시 조치:**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적용

 처리절차

-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매분기 첫째 달(1,4,7,10월)초 또는 수시 신청 안내 및 사실조사
- 신청기간: 해당분기 마지막 달(3,6,9,12월) 말일까지
- 구비서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 제출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예산액: 5,000천원(구비 100%)

9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 노인정책팀

☎ 3595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및 지급물품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
- 지급물품: 방짜유기 옥식기구 / 1인 1회 한정

□ 처리절차

-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매달 초 또는 수시 신청 안내 및 사실조사
- 신청기간: 해당 월 말일까지
- 구비서류: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위임 시 장수 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 함께 제출)
- 제출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2025년 예산액:** 4,000천 원(구비 100%)

10

경로우대업소 운영

❖ 노인정책팀

☎ 3586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

□ 주요내용

- 지정업소: 125개소
- 운영시기: 2008. 7월~
- 이용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운영방법 (50% 요금 할인)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 경로우대업소 표식: 사업장 입구
 - 경로우대업소 지정서: 사업장내 비치
 - 이용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관리기록부 비치 및 이용현황 기록관리
- 보상금 지급
 - 지급시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금액: 업소당 분기별 360천 원(월 120천 원 기준)

11

경로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지원

❖ 노인정책팀

☎ 3586

- 관련근거:** 「양곡관리법」 제9조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 단체(개인·단체·기관)로서 최근(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 온 무료급식 단체(구청장이 지정한 단체)

※ 단, 구청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정절차

- 공급대상자 지정 신청(급식단체) → 신청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 후 지정신청서 区로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검토 후 정부양곡 지원 단체 지정 (어르신장애인과)

○ 양곡 신청 및 공급 시기

- 신 청: 매월 10일(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공 급: 매월 20일(市 농산유통과 지급)

○ 공급가격: 6,710원/20kg

○ 공급량: 1인 1식당 180g 기준

※ 무료급식단체 신청량을 기초로 매월 급식인원을 점검하여 공급량 결정

12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노인시설팀

☎ 3585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수행기관

- 종합사회복지관(7개소): 월성·성서·신당·상인·본동·학산·본리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돌봄센터(6개소: 길실버·성서·월성·YWCA·대구·대덕)

주요내용

○ 지원대상: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수행기관에서 관할구역 내 자체조사(소득수준 기준 선정)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연중(도시락 주 5일, 밀반찬 주 1회, 고단백질 건강식품 주 1회)

○ 지원단가: 도시락(1식 4,000원), 밀반찬(1주 7,000원), 고단백질 건강식품(1주 1,000원)

※ 지원비용으로 식재료 및 급식용기 구입 가능(급식의 질 제고 용도 이외 사용 금지)

○ 지원절차

급식대상자 개별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결정(도시락, 밀반찬 등) → 급식업체 위탁 및 자체 조리 → 자원봉사자 활용, 배달

관련근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지급대상

- 대상인원: 68,000명 정도
- 지급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228만원, 노인부부 월364.8만원 이하
 - 노인부부만의 소득, 재산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무관)
 - ※ 공제부분: 근로소득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재산 13,500만원(금융,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 금융재산 2,000만원
 - ※ 국민연금과 연계(국민연금액 또는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 감액)

주요내용

- 지급금액: 노인단독 - 기준연금액 10% ~ 기준연금액(또는 부가연금액)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기준연금액 10% ~ 기준연금액(또는 부가연금액)
 노인부부 - 기준연금액 20% ~ 기준연금액(또는 부가연금액)
 (국비 80%, 시비 12%, 구비 8%)
 ※ 2025. 1월부터 기준연금액 342,510원,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 최초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매월 25일(토, 공휴일은 전일)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원칙

처리절차

- 신청안내
 - 65세 이상 노인: 연금 신청 · 접수
 - 신규 65세 도래자: 생일 도래 1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온라인 복지로
- 신청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신청
- 처리절차
 - 기초연금 신청 ·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소득 · 재산 조회 및 조사(복지정책과)
 - 급여결정(어르신장애인과) 및 통지(동 행정복지센터)
 - 급여지급(어르신장애인과)

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노인시설팀

☎ 3585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항(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수행기관: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 서비스 대상자

- 노인 가구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등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 ·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2025년 목표인원 및 사업비

- 목표인원: 2,500명 정도
- 사업비: 497,376천원 (균특 50%, 시비 25%, 구비 25%)

□ 서비스 내용

-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게이트웨이·화재·활동·출입문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설치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댁내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 댁내 시스템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

□ 이용자 부담: 무료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소득수준과 관계없음)

- 급여종류

- 시설급여: 시설입소(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지역): 가족요양비 지급

-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국비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12.95%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예외(국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등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부담금을 60% 또는 40% 감액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신청
(기초수급자: 시·군·구, 일반: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16 장기요양기관 설치

◆ 노인시설팀

☎ 3591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어르신장애인과
- 신고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시설유형별 신고서류

시설유형	필요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배치인력 중 자격보유가 필요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임대차계약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도, 건축물대장,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복지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 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 설치요건 등 심사(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및 결과 통보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시설 개요

【 노인주거복지시설 】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단체	설치일 (전화번호)
대구성로원	진천로3길 80 (진천동)	1,959.83㎡	70명	16명	박준희	성산복지재단	'70. 12. 14. (631-1220)

- 이용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입소절차: 시설 입소 신청(區) → 시설 입소가능여부 확인 → 시설 및 입소대상자 통보
※ 양로시설의 소재지가 대구시 관내 타 구·군일 경우 해당시설과 입소상담(보호자) 후 해당 구·군청에 입소의뢰

【 노인의료복지시설 】

- 시설현황: 39개소(요양시설 22, 요양공동생활가정 17)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입소절차: 주소지 관할 区에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확인 및 입소결정
→ 시설 및 입소대상자에게 통지(區)
※ 일반수급자가 시설수급자로 전환시 반드시 주소지를 해당 시설 주소지로 변경하고, 생계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단, 기초연금은 지급 가능

□ 2025년 예산액

- 양로시설 운영비: 1,082,186천원(시비 100%)
-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207,695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 노인요양시설(법인) 종사자 장려금
(1인 월6만원) 지원

1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시설팀

☎ 3591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돌봄센터)

○ 근 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7조

○ 서비스 내용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개별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위기관리, 가족 상담 등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사례관리: 시설별 80명 정도

○ 예산지원: 6개소 1,415,654천원(운영비 1,199,654천원, 사업비 216,000천원)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	정원	종사 자수	시설장	위탁단체	설치일 (전화번호)
성서재가 노인돌봄센터	문화회관 3길 27 1층(장기동)	343	80명	3명	이병규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12. 4. 6. (716-6123)
대구YWCA재가 노인돌봄센터	성서로 377, 5층(이곡동)	161	80명	3명	전문희	대구YWCA	'07. 2. 28. (587-1968)
월성재가 노인돌봄센터	월성로 20, 401호(월성동)	142	80명	3명	이승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99. 2. 5. (636-7300)
굿실버재가 노인돌봄센터	상인로 84, 4층 (상인동)	190	80명	3명	장성태	(사)굿실버복지회	'03. 12. 2. (652-0272)
대덕재가 노인돌봄센터	한실로 89, 4층 (도원동)	180	80명	3명	도현우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	'20. 1. 1. (625-9523)
대구재가 노인돌봄센터	월배로 385, 2층(송현동)	136	80명	3명	박기영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20. 1. 1. (295-6070)

○ 이용대상

- 요양등급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자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 이용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 시설이용을 신청하거나 또는 시설에 직접 방문면담 등을 통해 이용여부 결정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 근거: 「노인복지법」,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 서비스 내용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경증치매질환자에게 주간보호서비스,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지원
 - 이용정원: 시설별 40명
 - 이용료: 저소득층(무료), 일반인(1일 1~2만원)
- 예산지원: 3개소 1,240,202천원(운영비 1,174,202천원, 사업비 66,000천원)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	정원	종사자수	시설장	위탁단체	개소일 (전화번호)
상록수 기억학교	문화회관3길 27, 2층 (장기동)	362.06	40명	9명	심유미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13. 3. 2. (592-8882)
대구샘 기억학교	진천로3길 80 (진천동)	410.4	40명	9명	이영하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	'16. 3. 3. (642-1220)
늘푸른 기억학교	장기로 263, 4층(장기동)	327.7	40명	9명	함영덕	사회복지법인 금화복지재단	'22. 5. 6. (561-9988)

□ 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區 위탁시설

- 근거: 「노인복지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서비스 내용: 일반 주간보호서비스 및 시설별 특화사업
- 예산지원: 2개소 54,000천원(전액 사업비)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	정원	종사자수	시설장	위탁단체	개소일 (전화번호)
달서구 노인복지센터	학산로 140 (본동)	390.9	24명	8명	도원명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05. 5. 9. (634-8310)
달서구월배 노인복지센터	조암남로20길 48(월성동)	316	21명	8명	김성식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02. 2. 1. (634-8166)

□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복�, 방문간호, 복지용구
-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시설현황: 부록 참조

19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시설팀

☎ 3585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필수요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 거주자중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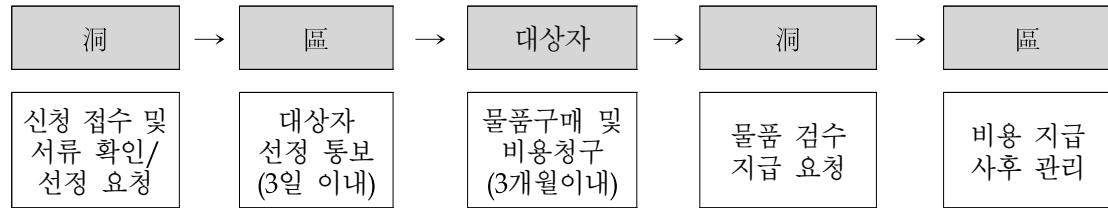
○ 지원기준: 5년 주기 1회(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20만원 이내 구입비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대상자가 직접 구입 후 청구에 따라 지원

사업기간: 2~11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절차



2025년 예산액: 10,800천 원(시비 60%, 구비 40%)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등록대상

- 15종 장애가 있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질환, 부상 등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등록가능 뇌병변(파킨슨병), 정신,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는 1년 이상 치료 후
- 뇌전증 장애는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3회 이상 발작이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신장 장애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자
- 자폐성 장애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주요내용

- 등록절차: 장애등급심사 의뢰(동,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필요 ※ 병원발급)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동)
- 장애정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복지카드의 교부 및 반환
 - 교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장애등급 해당자에게 장애인등록증 교부
 - 반환: 자격상실 또는 사망 시
-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및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의무재판정 장애인
 -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신청, 장애수당신청, 중증장애인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적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준 등록 장애인 중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원금액(국비 50%, 시비 50%)
 - 장애인등록 진단비 15,000원(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 검사비: 최대 10만원
- ※ 비수급자는 진단비 자부담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적용대상:** 등록 장애인

□ 통합복지카드의 기능

- 철도요금 할인 등 장애인 복지시책 수혜
- 대구시 지하철 Free Pass 기능 부여(2007. 7. 27. 시행)
 - 대상: 대구시 거주 등록장애인
(단,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의 경우 18세 미만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정신·자폐성·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이용방법: 대구 지하철 승차 시 우대권 발매 없이 자유로이 승차 가능
- 고속도로 할인기능 통합(2014. 12. 24. 시행)
 - ※ 기존 고속도로 할인카드 폐지

□ 처리절차

- 발급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신청서식: 장애인등록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사용
- 전산입력: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내용입력 및 자료전송(동 행정복지센터)
- 신용조회 및 카드제작: 신한카드,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 복지카드 교부: 개별 등기 우송

□ 유의사항

- 재발급 시 기존카드 반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1종류만 소지

- 관련근거:** 「장애인연금법」, 동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지급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지급내용

- 지급액(국비 70%, 시비 30%)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계(합계금액)
기초수급자(재가)	18~64세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65세이상	-	432,510원	423,510원
기초(보장시설특례자)	65세이상	-	80,000원	80,000원
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최고342,510원	80,000원	최고422,510원
	65세이상	-	80,000원 (차상위특례15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342,510원	30,000원	최고372,510원
	65세이상	-	50,000원	50,000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장애인연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방법: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동법 시행

규칙」 제38조

□ 지급대상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지급내용

-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국비 70%, 시비 30%)
 - 18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6만원(보장시설수급자 월3만원)
 - 18세 미만 장애아동

구 분	중증장애인수당	경증장애인수당	비고
생계·의료 급여(재가)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생계·의료 급여(시설)	월 9만원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시비특별 수당 지급금액(시비 100%)
 - 18세 이상 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재가 생계·의료 수급자: 월 3만원
 - 18세 미만 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기초수급자(당연적용대상)가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장애등급결정일
 -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 주의사항: 장애아동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보호자가 부양하는 장애인이 2명일 경우 각각 지급

□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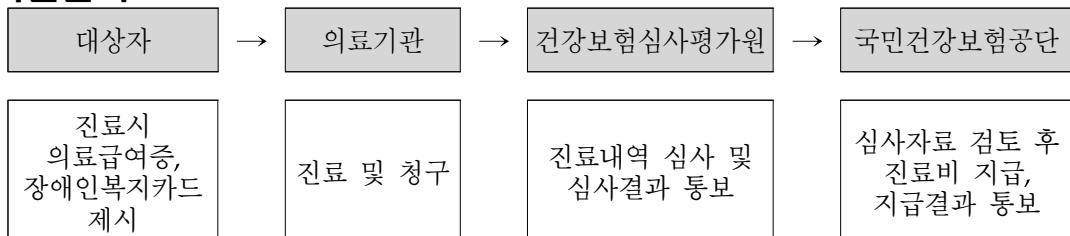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국비 80%, 시비 20%)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 2,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전액(본인부담 식대는 미지원)

□ 지원절차



- 구청에서는 장애인의료비 예탁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관리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교부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국비 80%, 구비 20%)

-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영상확대비디오, 녹음 및 재생장치,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립형 변기 및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식사보조기구(5종),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제어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앓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훨체어 액세서리,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대화용 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교부 우선순위

- | | |
|--------------------------|------------------|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 ④ 재가장애인 |
| ⑤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

신청시기 및 방법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상시 신청

26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장애인복지팀

☎ 2561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등록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사업내용

- 대구달서권역보장구지원센터 운영
 - 운영법인: 대구장애인재활협회(市 지정)
 - 사업내용: 재가 장애인 보장구 순회서비스, 자원봉사자 파송, 보장구 무료임대 등
 -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관내 등록 장애인 소득별 연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장애인 보조 기구 방문 수리 서비스 실시
-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연 300천원, 일반: 연 200천원 지원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성 장애인
(기능제한(X1) 점수 성인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기능제한(X1) 점수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우선 입소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 장애인

실비입소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됨에 따라 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입소비용을 실비로 징수하고 입소를 허용
-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입소 결정(월 비용 수납한도액: 784,700원 *물가상승분 반영)

입소절차

- 시설입소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 실태조사(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구) →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 시설관할 시·군·구로 입소의뢰 → 시설관할 시·군·구로부터의 입소결정 → 입소결정통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의 통학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주요내용**

- 신청자격: 등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관련시설 및 단체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처리절차(즉시 발급)**

- 신규발급: 공부상(필요시 현장 확인)당해 신청사실 확인 발급(동 행정복지센터)
- 재 발 급: 훼손, 파손 등 사유발생시 표지회수(사유서 징구)하고 발급(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표지발급 시 아래사항을 민원인에게 홍보
 - 타인에게 대여(양도)불가, 자동차 소유권 변동(양도, 증여, 교환)과 폐차시는 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회수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대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액 50%이하)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자영업자관련 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을 이용
하도록 안내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제외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응자 불가

주요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국민은행)

처리절차

- 자립자금대여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 반환 가능성 고려하여 별지3호 작성
및 신청서류를 어르신장애인과로 송부(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팀)
- 서류검토 및 결재 후 금융기관 및 대여대상자 결정통보: 어르신장애인과
 - ※ 구에서 추천하여도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안내 요망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 시설 현황

소재지	규모	개소일 (전화번호)	내부구조
달구벌대로 243길 24 (이곡동)	연면적 535,51m ² (지상 3층)	'01. 7. 7. 신체: 585-0789 교통: 586-8890	· 1층: 재활작업장, 사무실 · 2층: 재활작업장, 사무실 · 3층: 프로그램실

○ 장애인복지단체 무상임대

구분	무상임대 단체	임대기간	비고
1층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	2024.1.10.~2027.1.9.	· 재활작업장 운영
2층	(사)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2024.1.10.~2027.1.9.	· 재활작업장 운영
3층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 (사)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2024.1.10.~2027.1.9.	· 프로그램실 운영

□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모	개소일 (전화번호)	위탁단체 (위탁기간)	내부구조
갈밭남로 71 (도원동)	연면적 867,19m ² (지상 2층)	'98. 8. 13. (639-0321)	(사)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2023.1.1.~2025.12.31.)	1층: 재활운동실, 프로그램실 2층: 사무실, 대강당

○ 별도장비 지원: 승합자동차 1대

□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추진목적**

- 장애 등으로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

□ **장 소:** 갈밭남로 71(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3층)

□ **위탁운영:**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 **주요사업 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등 검토 및 대안 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 달서구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야외음악당로 47길 146 (두류동)	133.9m ²	12명	4명	김동빈	(사)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02. 3. 15. (628-2562)

○ 이용대상: 18세 이상 45세 미만 장애인

○ 이용시간 및 기간

- 주간보호: 평일(월~금) 09:00~18:00
- 단기보호: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이 용 료(주간보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60천원
- 일반 장애인(차상위 계층 포함): 월 200천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여가활동지원, 가족교육 등

□ 달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상화로 371, B1(상인동)	124.06m ²	15명	4명	성정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07. 6. 1. (641-1153)

○ 이용대상: 18세 이상 3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

○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이 용 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80천원
- 차상위계층: 월 150천원
- 일반장애인: 월 220천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여가활동지원, 가족교육 등

□ 달서구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신당로 56 (신당동)	188.76m ²	15명	4명	이태희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07. 5. 23. (583-1844)

○ 이용대상: 18세 이상 장애인

○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이 용 료(주간보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월 60천원

- 일반장애인: 월 200천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 예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월배로68안길 7 (송현동)	118.86m ²	15명	4명	이종원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1. 1. 5. (526-9913)

○ 이용대상: 18세 이상 성인지적발달장애인

○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이 용 료(주간보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00천원

- 일반장애인(차상위계층 포함): 월 200천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 마루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대명천로16길 33 (성당동)	88.11m ²	12명	4명	원주해	창도복지재단	'12. 6. 20. (655-1578)

○ 이용대상: 만 14세 이상 44세 이하 장애인

○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이 용 료(주간보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60천 원
- 차상위계층: 월 100천 원
- 일반장애인: 월 130천 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 백향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월배로85길 23 (송현동)	114m ²	15명	4명	이정식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4. 7. 16. (651-0191)

○ 이용대상: 18세 이상~ 45세 미만 성인지적발달여성장애인

○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이 용 료: 월 200천 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나누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정 원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성서로72길 53-8 (이곡동)	140.2m ²	16명	4명	장순자	대구희망복지재단	'16. 6. 30. (582-0130)

이용대상: 18세 이상 지적장애인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이용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00천 원
- 일반 장애인(차상위 계층 포함): 월 200천 원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달서구 수어통역센터

시설현황

소재지	규 모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 치 일 (전화번호)
갈밭남로 71, 4층 (도원동)	411.4m ²	7명 (통역사6)	김보식	(사)한국농아인협회	'03. 3. 5. (633-6902)

3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복지팀

☎ 2566

□ 하은의 집 공동생활가정

○ 시설현황

소재지	이용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월배로80길 86(송현동), 장인기502호	4명	장은주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0. 4. 19. (621-0226)

○ 이 용 료: 월 200천원(기초수급자 월 150천원)

□ 느티나무 공동생활가정

○ 시설현황

소재지	이용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감삼길 26-10, 502호(감삼동)	4명	이응수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1. 1. 5. (070-8236-0123)

○ 이 용 료: 월 250천원(기초수급자 월 200천원)

□ 블레싱홈

○ 시설현황

소재지	이용자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중흥로5길 22, 501호(송현동)	4명	박건	사회복지법인 서문복지재단	'15. 8. 25. (261-1134)

○ 이 용 료: 250천원(기초수급자, 차상위 월175천원)

본미소 힐링센터(단기 거주시설)

○ 시설현황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 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구마로26안길 32-3 (본동)	181.66m ²	10명	4명	이종숙	사회복지법인 해와달재단	'12. 8. 1. (566-8005)

- 이 용 대상: 18세 이상 여성 지적장애인
- 이 용 료: 월 450천원(기초수급자 월 350천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거주시설)

○ 시설현황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 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용산큰못1길12(용산동) 외 4개소	690.1m ²	30명	16명	김소영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12. 8. 1. (721-7090)

- 이 용 대상: 18세 이상 지적장애인
- 이 용 시간: 24시간
- 이 용 료: 월 747천원이내(기준중위소득 이하 294천원 실비 지원)
-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사회재활훈련, 정서지원, 가족지원 등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 시설현황

소재지	직원	정원 (근로자)	시설장	운영법인	사업내용	설치일 (전화번호)
월배로 410 (송현동) 4층	5명	30명	김문수	(사)대구여성 장애인연대	소독방역, 홍보물품, 임가공(극세사) 등, 상담 · 교육 · 홍보, 자립지원사업 등	'07. 8. 29. (637-6054)

 행복누리보호작업장

○ 시설현황

소재지	상근 직원	정원 (근로자)	시설장	운영법인	사업내용	설치일 (전화번호)
성서서로 19길 36 (월암동)	5명	26명	이성일	(사)한국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소독방역, 종이세제 임가공(박스포장 등) 상담 · 교육 · 홍보 자립지원사업 등	'10. 11. 1. (359-3523)

 대구다운장애인보호작업장

○ 시설현황

소재지	직원	정원 (근로자)	시설장	운영법인	작업내용	설치일 (전화번호)
와룡로 58길 37 (죽전동)	4명	30명	민해정	(사)대구다운협회	참기름 생산, 소화기 부품 등 임가공, 상담 · 교육 · 홍보, 자립지원사업 등	'15.8.26. (562-5008)

 가온보호작업장

○ 시설현황

소재지	직원	정원 (근로자)	시설장	운영법인	작업내용	설치일 (전화번호)
와룡로5길 11(본동), 2층	3명	32명	조원준	(사)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자동차 부품 등 임가공, 상담 · 교육 · 홍보, 자립지원사업 등	'17.3.15. (626-1142)

버팀목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 시설현황

소재지	직원	정원 (근로자)	시설장	운영법인	작업내용	설치일 (전화번호)
성서4차 첨단로 370 (대천동)	1명	20명	정명서	유화복지재단	사무·용지 생산, 선물포장, 상담·교육·홍보, 자립지원사업 등	'18. 8. 24. (263-2419)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인동료간 상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

□ **목 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리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운영기관:**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진)

- **소재지:** 달서구 구마로 251, 대성빌딩 3층(성당동)

- **지원대상:** 재가 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등 권리옹호 지원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자립생활주택 운영
-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

36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장애인복지팀

☎ 2569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온전히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주거 공간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단기 1주일부터 최장 2년)
- 주택현황

운영기관	주소	면적(㎡)	정원(명)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재진)	월곡로 320(상인동, 보성은하아파트)	59.88	2
	학산로 30(월성동, 월성보성1단지아파트)	58.11	2
	구마로12길 89(본동, 월성주공5단지아파트)	49.94	2

□ 정착형 자립생활주택

-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온전히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주거 공간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최대 6년 거주)
- 주택현황

운영기관	주소	면적(㎡)	정원(명)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재진)	구마로52안길 57(송현동, 송현제림아파트)	84.97	3
	구마로52안길 57(송현동. 송현제림아파트)	59.98	2
	당산로 82(성당동, 두산위브아파트)	59.97	2
	상화북로 196(상인동, 상인제림아파트)	59.895	2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정미)	학산로2길 27(월성동, 월성화성아파트)	65.91	3

□ 시범사업 주택(보건복지부 시범사업 (2023. 11. ~ 2025. 12. 31. 예정)

-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입소자,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 주택현황

운영기관	주소	면적(㎡)	정원(명)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정미)	학산로19길45(본동, 대건팰리스)	76.87	2
	화암로73길 8-10(대곡동. 태림빌라트)	49.08	1
	화암로73길 8-10(대곡동, 태림빌라트)	28.06	1
	성서로72길 53-7(이곡동, 센트럴하우스)	69.59	2

관련근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목 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신청자격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없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연령: 6세 이상~ 65세 미만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이상도 가능

서비스 인정 체계

-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1구간 7,980천원~15구간 1,000천원)
 -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서비스 단가: 시간당 16,620원(심야·공휴일 24,930원)
-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월2만원), 일반(월40,000원~209,2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광역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서활동지원센터, 청인달서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맑음지사, 가온사회적협동조합다온센터

관련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 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신청자격

- 연령: 18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유형: 등록된 지적 및 자폐장애의 성인 발달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지원내용

- 급여유형: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
-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16,620원, 1인 집중지원서비스 및 그룹별 차등단가 적용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익월부터 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주)한국특수체육재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행복림, 아름다운집, (사)한국스포츠과학교육협회, 함께맘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 강재영아동발달센터(죽전점), 더이룸사회적협동조합, (사)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39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장애인복지팀

☎ 2565

□ 관련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목 적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 신청자격

- 연령: 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재학생
- 장애유형: 등록된 지적 및 자폐장애의 발달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방과 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서비스지원내용

- 급여유형: 월 66시간(월 ~ 토 9시 ~ 21시, 일일 최대9시간)
-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16,150원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익월부터 바우처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주)한국특수체육재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행복림, 강재영아동발달센터(죽전점)

관련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 적**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

 신청자격

- 연령: 18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유형: 등록된 지적 및 자폐장애의 성인 발달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등 적격성 판단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서비스지원내용

- 서비스유형
 - 24시간 개별 1:1(낮활동 + 야간 주거지원,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 주간 개별 1:1(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지원, 10:00~17:00)
 - 주간 그룹 1:1 바우처(그룹형 낮활동 지원,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 공휴일 휴무(서비스유형 공통)
-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24,930원(주간 그룹 1:1)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3년
 - ※ 2회(회당 1년) 연장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주간그룹 1:1은 재조사 후 갱신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사)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관련근거: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1조

목 적

-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발달재활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자격

- 연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해당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로 판단)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종류: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 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1인 월 지원액: 17만원~25만원(소득별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월2만원), 중위소득 65% 이하(월4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월6만원), 중위소득 180% 이하(월8만원)
- 지원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익월부터 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외 48개소

관련근거: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목 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감각적 장애: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 장애

 신청자격

- 연령: 12세 미만 비장애인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로 판단)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1인 월 지원액: 16만원~2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월 2만원), 중위소득 65% 이하(월 4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월 6만원)
- 지원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 익월부터 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4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팀

☎ 2561

□ 관련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 도모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자폐성 장애를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지원(월 3~4회, 12개월간,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 서비스 이용금액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 외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인력은 상담관련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 취득자

□ 서비스 제공기관

- 강재영아동발달센터(죽전점), 아하심리언어클리닉

44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 장애인복지팀

☎ 2564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신청자격:**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
- 목 적:**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촉진
- 사업내용**
 - 직업전환 프로그램: 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현장 중심의 직무지 개발 및 배치
 -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중심 교육, 자기옹호 및 자조모임 지원
 -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진로 탐색을 위한 자기개발과 사회활동기회 제공
 - 지역사회 인식개선: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문화체험, 미술, 난타, 스포츠, 숲체험 등
- 사업 수행기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월성로 77, ☎ 634-7230)

45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복지팀

☎ 2564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사업개요**
 - 서비스대상: 달서구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우선(시설규모를 감안하여 1일 20명 정도)
 - 위치: 달서구 갈밭남로 71, 3층(도원동)
 - 사업내용(외부 전문강사 초빙)
 - 가요교실: 주 1회(매주 수요일 11:00~12:00)
 - 요가교실: 주 1회(매주 금요일 13:00~14:00)
 - 운영방법: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서구지회 프로그램으로 운영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 **목 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사업유형**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 근무시간: 주 14시간 근무(월 56시간)
 - 근무내용: 환경정리, 급식보조 등
 - 보수 등: 월 561,680원(고용, 산재보험 가입)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사업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지원업무
 - 근무지: 달서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공공기관 등
 - 보수 등: 월 2,096,270원(4대보험 가입)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 사업
 - 근무시간: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지원업무
 - 근무지: 달서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공공기관 등
 - 보수 등: 월 1,048,140원(4대보험 가입)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내용: 경로당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보수 등: 월 1,313,980원(4대보험 가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보조
 - 보수 등: 월 1,313,980원(4대보험 가입)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목 적**

- 특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지역내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운영

 사업개요

- 운영시간: 매주 토요일 11:00~13:00(여름·겨울방학 제외)
- 장 소: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 대강당
- 대 상: 달서구 거주 발달장애인
- 교육인원: 60명(장애인 40명, 자원봉사자 20명)
- 교육내용: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 실내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사회재활적응훈련, 여가생활하기 등 실외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전석장애인복지·스포츠센터(☎ 652-8075) 보조사업으로 운영

 학교조직

- 교 장: 달서구청장
- 직 원: 담당(간사) 1명
- 자원봉사자: 대표 이끄미(사랑의 토요학교 자원봉사자) 5명

□ 목 적

- 지역장애인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운영일시: 매주 월~금(9:00~18:00), 토(9:00~12:00)
- 대상: 달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 이용횟수
 - 주 1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주 2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 3회: 신장투석 장애인
- 신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접수 및 상담(☎ 634-7230)
- 운영방법: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 지원내용

- 이동지원센터 리프트 차량으로 대상자 이동지원
- 대구 전 지역 외출 서비스, 귀가 서비스, 병원 서비스(이용료 무료)

□ 목 적

- 신체적, 환경적 여건으로 기본적인 청결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대중목욕탕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차량편의와 목욕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운영일시: 매월 둘째주 수요일 11:30~15:30(1월, 8월 제외)
- 장 소: 달구벌종합복지관 목욕탕(지하1층)
- 대 상: 달서구 관내 중증장애인 36명 정도
- 신 청: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접수 및 상담(☎ 636-1365)
- 자원봉사: 20명(달서모범운전자회, 월성2동적십자봉사단, 개인봉사자)
- 운영방법: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 지원내용

- 달서모범운전자회 차량 지원으로 대상자 이동지원
- 목욕탕 내에서 주부봉사단 및 사회봉사자의 목욕봉사(때밀이, 말벗, 옷입기 등)

□ 목 적

-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정에서도 1차적 위생 생활이 어려운 재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운영일시: 매주 월~금(매일 3회: 10시, 14시, 16시)
- 장 소: 대상자 가정(방문목욕)
- 대 상: 달서구 관내 중증장애인 33명 정도
- 신 청: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접수 및 상담(☎ 636-1365)
- 자원봉사: 1명(월성2동적십자봉사단)
- 운영방법: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 지원내용

- 목욕 대상자 방문주기가 최소 월 1회 원칙으로 목욕 실시
- 이동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이동방문목욕사업
- 이동방문목욕 시 건강 체크 및 정서적 지지

□ **관련근거:** 「민법」 제14조의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목 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개요

- ### ○ 서비스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 ○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월 20만원(최대 50만원)

- ### ○ 지원신청

- 신청자: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지원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어르신장애인과

- 지원절차: 신청 → 대상자 선정(시·군·구) → 심판절차비용 지급(후견인 교육기관)
→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군·구/후견인 교육기관) →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군·구/중앙지원단) → 후견심판청구 → 공공후견인 선임 → 공공후견인 활동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리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 범위: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방문 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24년 출산부터 적용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목 적**

- 저소득 재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환경을 장애유형·장애정도·행동특성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락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장애유형,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주거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 지원범위: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등
- 신청장소: 洞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대상자 모집 공고(어르신장애인과)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대상 가구 방문 조사 및 선정(어르신장애인과) → 공사시행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2025년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우선 배치
- 자활급여 특례자
- 일반수급자: 참여희망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근로능력 없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주요내용

- 달서지역자활센터·달서행정복지역자활센터(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① 참여: 36개 사업단 383명 정도
 - ② 내용: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높은 자에게 기술습득을 통한 자활유도
 - ③ 인건비: 시장진입형(1인/일 64,220원), 사회서비스형(1인/일 56,210원)
※ 실비 4,000원 포함
-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 ① 내용: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② 인건비
 -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1인/일 64,220원(실비 4,000원 포함)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1인/일 56,210원(실비 4,000원 포함)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① 내용: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안부확인, 지역환경 정비 등 실시
 - ② 인건비: 1인/일 32,980원(실비 4,000원 포함)
※ 洞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참여

□ 처리절차

- 사업참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 자립지원팀에서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유형에 배치
- 사업소득 반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매월 생계비에 반영(區)
 - ※ 조건불이행시 본인의 생계급여를 3개월간 중지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사업 참여 유도

□ 2025년 예산액: 9,265,267천원(국비 90%, 시비 7%, 구비 3%)

□ 운영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참여대상	센터장	지정위탁기관 (보건복지부)	설치일 (전화번호)
달서 지역자활센터	계대동문로 77 (이곡동)	396.44m ²	203명	지혜경	대구YWCA	'01. 1. 30. (585-6612)
달서행복 지역자활센터	상화로 373 (상인동)	653.81m ²	175명	김태열	(사)보림	'11. 3. 1. (644-1080)

○ 주요 사업내용

달서지역자활센터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3개) 및 사회서비스형(11개) 청년자립도전형(1개) 등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가사 · 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추진 ○ 자활기업(7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3개) 및 사회서비스형(10개), 청년자립도전형(1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가사 · 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추진 ○ 자활기업(1개) 지원

□ 자활근로사업 운영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및 차상위자
- 참여절차: 대상자 발굴(동)→확인 및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장 배치·통보(구)→상담 및 대상자 확정(지역자활센터)→사업장 배치→대상자 자활사업 참여
- 달서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내용: 20개 사업단, 240명 참여
 - 시장진입형(3개): THE크리닝, 빨래장이, 그린그루브
 - 청년자립도전형(1개): ICT청년자립도전
 - 사회서비스형(13개): 공방, 맨드리, 희망모아, 달자네누룽지, 달자테크, 나르고
나눔, 한마음, 보드라미, 두손, 그린그루브, 달자커피, 아이꿈카페
 - 시간제자활근로(1개): 디딤돌
 - 인턴 · 자활도우미(1개) / 게이트웨이과정(1개)
 - 자활기업(7개): 참크린, 드림장식, 달서자원, 대구주거환경개선센터, 가람,
달인의 짐닭(용산점), 대구희망르미협동조합
-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내용: 18개 사업단, 215명 예정
 - 시장진입형(3개): 해피푸드Ⅱ, 빨래장이, 달인의 짐닭(월성점)
 - 청년자립도전형(1개): 틈카페 및 편의점
 - 사회서비스형(10개): 행복간병, 행복모아, 크린해피, 희망봉제, 도니야돈, 해피데이
즈, 행복누리, 행복스타트, 세차하는 사람들,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 시간제자활근로(1개): 행복한일자리
 - 인턴 · 자활도우미(1개) / 게이트웨이과정(1개/14명)
 - 자활기업(1개): 행복물류

□ 2025년 예산액: 1,133,112천원(국비 70%, 시비 30%)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제외대상 ① 시설 수급자 및 병원 입원자
②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 유사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제공시간: 24시간, 27시간, 40시간/ 월(초과시간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명	소재지	등록일자	연락처
달서지역자활센터	계대동문로 77(이곡2동행정복지센터3층)	2012.10.07.	585-6612
달서행정복지역자활센터	상화로 373(상인동, 비둘기아파트2단지)	"	644-1080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계	지원액	본인부담액	비고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시간단가 17,2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시간단가 17,2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	

□ 선정절차

- 동에 신청 및 조사(보건소, 병원,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 발굴 의뢰 가능)
→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구)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수혜자와 계약

□ 2025년 예산액: 414,286천원(균특 70%, 시비 15%, 구비 15%)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 희망저축계좌 II: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 일하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15~39세)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19~34세)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3년간 매월 본인저축(월10만원) 대비 1:3 정부지원금 배정

- 희망저축계좌 II: 3년간 매월 본인저축(월10만원) 대비 1:1 정부지원금 배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 3년간 매월 본인저축(월10만원) 대비 1:3 정부지원금 배정
- 차상위 초과: 3년간 매월 본인저축(월10만원) 대비 1:1 정부지원금 배정

- 지원 조건: 3년간 적립, 통장별 지급해지요건 이수시 시 전액 지급

- 신 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위탁 은행: 하나은행

2025년 예산액: 3,011,212천 원(국비 90%, 시비 7%, 구비 3%)

제3장 아동가족

□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추진목적

-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 활동 및 강좌 운영하여 가족중심의 교육·여가·문화공간으로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가치 확산,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의식 회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설현황

- 위 치: 조암남로 137
- 규 모: 부지면적 1,988㎡, 연면적 4,269.26㎡(지하1층, 지상4층)
1~2층: 달서가족문화도서관, 3~4층: 달서가족문화센터
- 주요시설

총 별	면 적 (㎡)	주 요 용 도
지상3층	849.71	가족문화센터 사무실, 유아놀이방,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3, 홈페션실, 커뮤니티 공간
지상4층	777.40	소공연장, 프로그램실 2, 요리실(커피바리스타 포함)

- 운영주체: (재)달서문화재단

□ 주요사업내용

-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는 ‘문화강좌’(학기별 150개 정도)
- 여성·가족 문제 함께 생각하는 전문가 초청 ‘유례카극장’
- 온 가족이 즐기는 감동의 시간 ‘우리 동네 가족 콘서트’
-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엄마들의 수다’
- 가족단위 참여 주말 특별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우리 가족만의 추억 만들기 ‘토요가족만세’
- 가정의 중심, 부부 관계 회복 ‘부부심리테라피’
- 엄마는 힐링 아이는 배움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
- 가족문화센터 수강생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5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여성가족친화팀

☎ 3514

□ 관련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 추진목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센터현황

소재지	근무인원	시설규모	운영법인
달서구 조암남로 137 (달서가족문화센터)	9명: 센터장 1, 팀장 1, 취업상담사 6, 직업상담사 2	지상 3 ~ 4층 (연면적 1,627.11m ²) <u>프로그램실, 양재실,</u> 소공연장, 요리실 등	(주)달서문화재단

□ 주요사업내용

- 구인·구직상담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으로 장기미취업 여성 취업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재취업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면접교육, 동행면접 지원 서비스로 취업률 향상
-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 수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세대수	인원				
자용모자 복지관	달구벌대로 301길 186 (용산동)	건물 1,534.75m ²	25세대 (11평형)	65명	5명	박민석	자용 복지재단	1993. 11. 17. (564-1043)
본마을빌라 모자원	구마로14남길 46 (본동)	건물 1,072.17m ²	25세대 (11평형)	60명	4명	조은아	본마을 복지재단	2003. 1. 2. (568-5115)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 보호기간 및 지원내용

- 보호기간: 5년 이내(1년 미만 단위로 총 2년 이내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 고등학생 학비 지원 및 초·중·고교생 방과 후 아동 지도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5,000천원(2년이상 거주 후 퇴소 세대)
 -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 입소절차

- 입소상담 및 신청서 제출(민원인 → 洞) → 입소신청서, 실태조사서 제출 및 입소 의뢰(洞 → 区) → 입소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區 → 洞, 해당 시설)
 - ※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시설에 입소 보호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정원	종사자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대구클로버	두류공원로259 (두류동)	건 물 479.73m ²	6세대 12명	3명	박인숙	홀트아동복지회	2009. 6. 17. (654-0181)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기간 및 지원내용

- 보호기간: 3년 이내(6개월 미만 단위로 총 1년 이내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저소득 한부모 해당시)
- 숙식무료제공 및 자립프로그램 지원 등

 입소절차

- 미혼모자시설 또는 관할 구청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자격여부 확인 → 시설장은 입소가능 여부를 확인 후 미혼모자 입소 조치 → 시설장은 시설 관할 구청에 입소 보고(시설 → 區)

※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시설에 입소 보호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대상

- 한부모가족 선정(급여대상), 증명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구분	가구원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와 父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이하(취학 시에는 만 22세, 연령이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까지 지원)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아래의 각 호 및 202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1~7의 조건을 갖춘 자(3 제외)
9.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1인당 월 230천원
- 추가 아동양육비: 1)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혼인여력 무)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천원
2)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3)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천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부교재비(연 60천원) 및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0천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9

대구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

❖ 여성가족친화팀

☎3512

□ 관련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설현황

소재지	규모	종사자	시설장 (센터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월배로 410 (송현동)	121.87m ²	8명	이주영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2003. 3. 12. (637-6057)

□ 주요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폭력·성 상담, 전반적인 장애상담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조사·연구 활동 등

□ 지원내역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 여성폭력 예방활동사업

10

달서구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친화팀

☎2531

□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시설현황

소재지	규모	종사자	시설장	운영법인	설치일 (전화번호)
아와음악당로13길 60 (성당동)	1,105.37m ²	40명	원준호	(사)가정복지회	2005. 4. 14. (593-1511)

□ 주요 사업내용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웃 간에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위한 공간 운영
-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 취약가족의 상담·치료·지역사회 연계 등의 지원
-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필요로 하는 가정에 과연하여 육아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학습 지원 제공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고위험군 다문화가족 발굴을 통한 가족관리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현재 중국어, 베트남어 지원)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육아경험 등 정보 교류소통 공간

□ 관련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목 적

-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 조성

□ 지원사업(구비 100%)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 분야
 - 달서 다문화 알쓸잡(job)대학 운영: 학과운영,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 다문화가족도서관 운영: 국내·외 도서 열람 및 대여, 다국어 지원 도서·정보 지원 등
 - 결혼이민자 희망 아카데미 운영: 요리교실, 한국문화 적응 교육,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
 - 다문화자녀 드림스쿨(Dream School) 운영: 다문화 자녀 생애 주기별 성장 지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 및 이해도 증진』 분야
 - 외국인주민‘러브 인 달서’운영: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체험 및 관내 주요시설 견학 등
 - 행복한 명절 보내기: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명절음식 만들기, 문화체험 등
 - 이웃나라 문화체험 교육: 중국, 베트남 등 나라별 풍습, 놀이, 음식 등 부스 체험
 - 외국인주민 긴급구호비 지급: 질병, 재해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 지원
 - 다문화 유공자 표창: 다문화사회 정착 기여 내·외국인 주민 표창
 - 다문화 자조모임(봉사단) 운영 활성화: 봉사활동 참여 유도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 『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분야
 - 달서 다문화축제: 내·외국인주민 어울림 가요제, 퍼레이드, 부대 행사 등
 - 다문화 한글백일장 개최: 외국인 주민 산문 글짓기, 시화 그리기 등
 - 다문화가족콘서트 개최: 다문화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토크 형식의 콘서트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 및 지역사회 소통활동 등
- 『다문화가정의 사각지대 해소』 분야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운영
 - 기타 사업대상별 유관기관 사업연계 등

관련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20조

 운영기관: 달서구가족센터

- 아이돌보미를 선발·양성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공백 가정

구 분	대 상	이용시간	지원 내용
종일제	만3개월이상~만36개월이하 (이른둥이의 경우 40개월까지)	월 80~200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상 사용)	시간당 1,828~10,354원
시간제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	연 960시간 이내 (1회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 (아동)주소지 동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21. 3월부터 이용 가능)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2025. 1월 기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			
		A형 (2018.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 관련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운영목적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을 지원
- 가족돌봄 기능보완 및 자녀 양육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 이용 대상

-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총사자	운영시간	운영기관	설치일 (전화번호)
아이나래	와룡로 15, 2층(본동)	164.47m ²	1명	월 13:00~18:00, 화~금 10:00~18:00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10:00~15:00	달서구가족센터	2015. 12. 18. (262-1512)
꿈도담터	야외음악당로13길 60(성당동)	71.34m ²	1명	월~금 10:00~19:00	"	2018. 12. 13. (593-1511)
다(多)도담	서당로 30 (구)신당중학교 1층	67m ²	1명	월~금 10:00~18:00	"	2019. 12. 30. (267-1512)
꿈그린	감삼북로 119-10 (감삼동)	113.42m ²	1명	월~금 10:00~18:00	"	2024. 1. 31.

□ 주요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부모·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 가족품앗이 활동 장소 제공 및 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으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아동의 행복지수 향상

□ 추진방향

- UN 아동권리협약 이념에 기초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
- 모든 아동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추진으로 패러다임 전환

□ 추진내용

-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
 -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심의
- 아동의 참여체계
 -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친화모니터단」 운영
 - 아동참여기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선진지 탐방
 - 아동참여기구 제안사업 추진
- 아동권리대변인
 -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피슨 운영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학교급식법」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조례」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주요내용

- 급식비: 1인 1식 9,500원(지역아동센터 1식 8,500원)
- 급식기간: 연중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조·석식 및 방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급식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부식업체 등 사용가능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은 단체급식소 급식

□ 처리절차

- 조사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의 아동도 지원)
- 선정방법
 - 신청 → 상담 및 지원 형태 조사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
 - 각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급식필요 아동에 대해 수시조사
- 조사내용: 결식여부, 소득조사 등

관련근거

- 「아동수당법」 및 「동법 시행령」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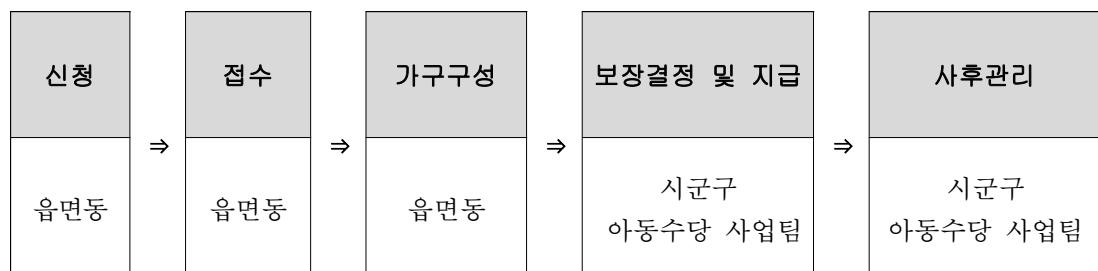
-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주요내용

- 지원내용: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 아동에게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원시기: 매월 25일경 계좌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처리절차

< 아동수당 보장의 신청·결정 처리절차 >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7조

□ 적용대상

-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가정위탁아동 선정: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전문 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보호
 - 일반 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주요내용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양육보조금(1인 만13세 미만 월 300천원, 만13세 이상 월 400천원),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예능교육비(초등학생), 대학입학금

□ 관련근거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년소녀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1 ~ 2%)를 부담하되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구 분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 된 가구(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있는 세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만 20세 이하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신청장소	각 동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신청(지자체 조사)	각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신청(지자체 조사)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추천서, 등본 ·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myhome.lh.or.kr)에서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공단에서 별급한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추천서, 등본 	복지시설장의 추천서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인 가구 50㎡ 이하)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6천만원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 지원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부 (☎ 603-2711), 대구교통안전공단(☎ 794-3811) 			

□ 처리절차

- 입주희망자 신청(洞) → 생활실태 및 자격요건 조사(洞) → 입주희망자 통보 (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상자 확정 및 임대차 계약(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주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936(2007. 3. 14.)
-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3355(2007. 3. 16.)

□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장애인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주요내용

-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희망키움통장 예외)
- 금융계좌 운영기관: 신한은행
- 매칭 및 적립(국비 70%, 시비 30%)
 -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5만원 적립시 정부 매칭금 10만원)
 - 기본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적립은 가능하나,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지원은 없음
 -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사용용도 및 방법: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 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 없이 만기해지 가능)

□ 관련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적용대상

- 입양 축하금: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 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 양육수당: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만 18세 해당 달까지 지급)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급금액

- 입양 축하금(기금 70%, 시비 30%): 입양아동 1인당 200만원
- 입양 양육수당(기금 70%, 시비 30%): 1인 월 200천원

□ 지급방법

- 입양축하금: 양부모는 관련서류(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인 계좌 입금
- 입양양육수당: 양부모는 관련서류(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인 계좌 입금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이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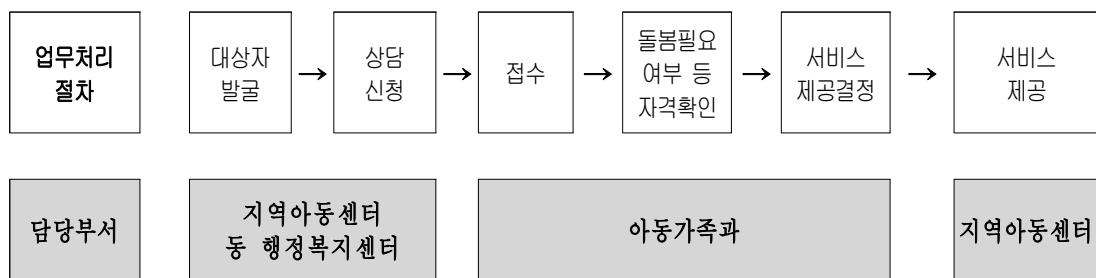
-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설치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2개 이상)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m² 이상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3인
 - 아동 29인 이하: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시설운영(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역아동센터 현황: 32개소(2024. 12. 31. 현재)
- 운영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원칙
- 운영프로그램: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아동등록절차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제52조제1항제4호

□ 생활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 단체	종사자수 (명)	설치일
아이사랑	비공개시설	134	6 (여아전용)	사단법인 좋은 학교만들기	6	2022.12.1

□ 설치 및 운영기준

- 시설유형: 여아전용
- 입소기간:
 -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 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 가능
- 시설기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주요기능: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장 1, 보육사 4인, 심리치료사 1인
- 사업대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입소절차

- 아동학대 신고(1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현장조사 → 학대발생 관할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입소요청 → 시설 입소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시설현황

- 소재지: 와룡로51길25
- 건축규모: 부지면적 846m², 연면적 2,320,50m²(지하 2층, 지상 4층)
- 층별 시설내역

구분	면적	주요시설
계	2,320,50m ²	
지하2층	53.30m ²	○ 전기 · 기계실
지하1층	624.58m ²	○ 주차장(19대 정도)
1층	424.94m ²	○ 실내놀이터, 유아요리교실, 사무실
2층	451.14m ²	○ 장난감도서관, 보드게임방, VR체험실, 카페
3층	412.15m ²	○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실(1, 2), 커뮤니티마루
4층	354.39m ²	○ 가족소리홀, 프로그램실(3)

□ 관리운영

- 위탁법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운영시간: 화~토 09:00~18:00(아이꿈센터)
월~금 11:00~20:00 / 방학중 08:30~18:00(다함께돌봄센터)
- 직원현황: 9명
- 사업내용:
 - 아동의 놀이, 교육, 돌봄, 창의활동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사회성활동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 이용방법: 홈페이지예약(<https://dsidream.or.kr>), 전화방문예약(053-241-2004)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초등학생) 아동(소득수준 무관)

 설치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2021.1.12.개정)

놀이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갖추되 해당 시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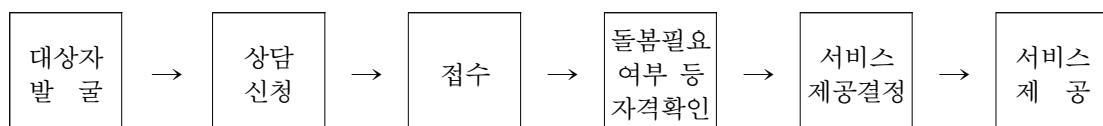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6m² 이상
- 종사자 기준: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배치
-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균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시설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소일	운영인력(명)	규모	비고
유천돌봄센터	조암로 175, 유천동행정복지센터 4층	2021.12.6.	2명	면적: 142m ²	
아이꿈 돌봄센터	와룡로51길25, 달서아이꿈센터 3층	2022.12.27.	2명	면적: 104m ²	

- 운영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원칙
- 운영프로그램: 돌봄, 학습, 놀이 등 프로그램
- 이용방법: 이용료 월 100천원 이내(간식비 별도)
- 아동등록절차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6조

이용대상

- 달서구 내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 및 달서구 소재 어린이집

설치개요

시설명	소재지	개소일	운영인력(명)	규모 및 구성	비고
유천장난감 도서관	조암로 175, 유천동행정복지센터 3층	2021.12.6.	2명	면적: 132m ² - 데스크, - 대여실 - 소독실	
아이꿈장난감 도서관	와룡로51길25, 달서아이꿈센터 2층	2022.12.27.	2명	면적: 126m ² - 데스크, - 대여실 - 소독실	

시설운영

- 운영시간: 화~토 09:00부터 18:00까지(수요일 19:00까지), 소독시간 12: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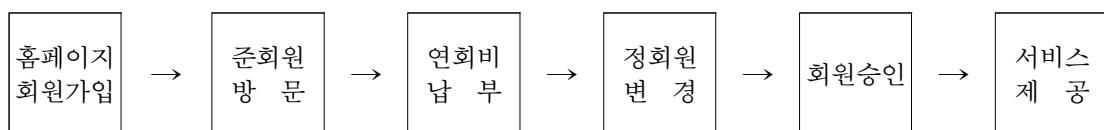
○ 이용방법

- 연회비 20,000원(시설회원 30,000원), 대여료 무료
- 1회 2점 7일 대여 / 1회 연장, 최대 14일

- 대여수량: 유천장난감도서관 / 240종 1,389점 정도

아이꿈장난감도서관 / 252종 1,180점 정도

○ 이용절차



* 홈페이지: <https://dalseotoys.or.kr>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생활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운영 단체	시설장	종사자수 (명)	설치일 (전화번호)
우리들세상 남학생 공동생활가정	월배로 199-18 (상인동)	84.40	7	개인	장춘례	4	'07. 12. 31. (638-7922)
우리들세상 여학생 공동생활가정	"	85.61	7	"	엄영희	4	'07. 12. 31. (639-3922)

□ 그룹홈 설치 및 운영기준

- 그룹홈 유형: 남녀 분리형, 남녀 혼합형
- 인원 및 보호기간
 -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함
 - 장기보호: 18세 미만(출생일 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시설기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용면적 82.5㎡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장 1, 보육사 1인 이상
-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 입소절차

- 아동발견 및 보호자 의뢰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적합한 아동복지 시설 입소, 전문 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실시(법 제15조제4항)

□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관련근거: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기준: 부 or 모가 대상자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지원절차: (신청인→동)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동→아동가족과) 신청 및 변동자료 송부
(아동가족과→신청인) 자격 검토 후 계좌입금(※ 신청 익월 10일경 지급)

□ 달서구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 관련근거: 「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중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준: 중학교 입학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대상자, 부 or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
- 신청기한: 매년 3~4월(일정 변동 가능함)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단, 신청에 의하면 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 지원)

□ 대구시 출산축하금 지원

-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市「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기준: 출생일(or 신청일)현재 부 or 모 주민등록지가 달서구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 지원내용: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지원절차: (신청인→동)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동→아동가족과) 신청 및 변동자료 송부
(아동가족과→신청인) 자격 검토 후 계좌입금(※ 신청 익월 10일경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원대상: 출생신고된 모든 영유아
-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대상자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
-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절차: 신청·접수(관할 동) → 지원결정·통보(아동가족과) → 바우처 생성 및 관리(사회보장정보원) → 대상자 관리(아동가족과)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미사용시 자동 소멸)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28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출산장려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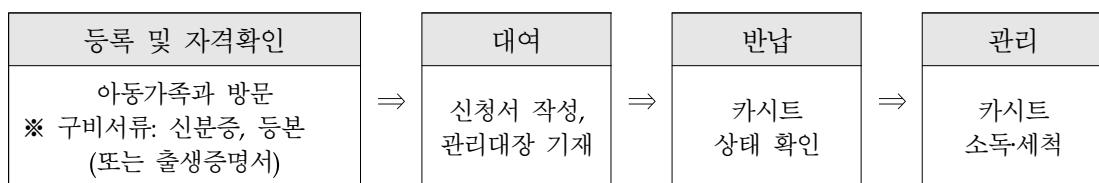
☎ 3712

□ 달서 Happy 육아용품 지원

- 관련근거: 「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자녀의 부 or 모
-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원
- 지원내용: 육아용품 지원(휴대용유모차, 아기띠 중 택 1)
- 신청기한: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절차: (신청인→동) 출생신고 시 신청
(동→아동가족과) 매월 5일까지 전월 신청서 제출
(아동가족과→신청인) 자격 검토 후 배송(※ 신청 익월 말일경 배송)

□ 신생아 카시트 무료 대여 사업

-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지원대상: 관내 6개월 미만 영아 가정
-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부 or 모가 달서구에 주민등록
- 대여기간: 5개월(연장 불가)
- 대여품목: 바구니 카시트(총 14대)
- 대여절차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목 적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과 권리증진 도모

□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방법: 전국 공통 ☎112

□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성 학 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방 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아동학대조사 업무 절차

신고 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사례종결
	현장출동	아동학대조사	현장판단	최종판단	계획수립	계획통보	사례점검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즉시 112 신고	①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②신고 즉시 현장 출동 ③경찰 동행 요청	①대면분리조사 ②발생장소 및 주변인 조사 ③절차고지	①아동학대 판단척도 사용 ②필요시 응급조치 등 분리조치	①자체사례 회의 ②필요시 사례결정 위원회 활용	①자체사례 회의 ②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①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 연계 ②(분리보호) 아동보호전담 요원 통보	①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정기회의 (월 1회) 아동보호전담 요원 통보	①사례판단 종결회의 ②종결 전 모니터링

□ 주요내용

- 신속한 현장출동과 면밀한 아동학대조사로 피해아동 적극 보호 및 재학대 예방
- 온마을 아동보호시스템 「달서 아이 ON 24」 아동지킴이 교육 강화
- 고위험 아동, 부모 및 가족 지원 「달서구 셋(3)~싹 지키기」 사업 추진
- 달서 I(아이)별 맞춤형 지원 「달서 I FOR YOU」 사업 추진
- 달서부모 단계별 궁정양육 홍보 「달서 I MEET YOU」 사업 추진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월 1회)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7개소) 운영

□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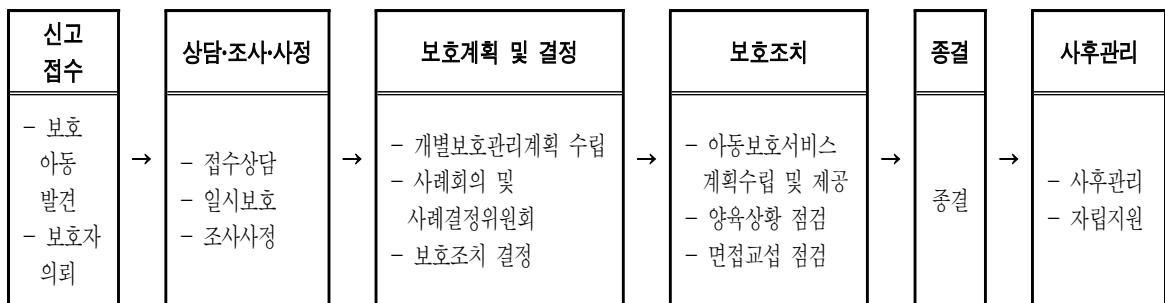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및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목 적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유기적인 아동보호 전달 체계지원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

□ 아동보호 업무 절차

- 유형: 원가정보호(복귀), 친족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입양 상담 등



※ 보호조치 및 종결(퇴소 등) 사항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 의뢰 시 맞춤형 상담(입양상담 등)
- 보호대상아동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 사후관리 대상아동 점검(5년, 연 1회 이상)
- 입양사후 관리대상 점검(1년, 6회)
- 보호대상아동 분기별 면접교섭 점검
- 보호대상아동 가족 프로그램 운영

□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 결혼전반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 확산
- 가족형성의 소중함 제고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
-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자별 맞춤형교육 등으로 마인드 변화 유도
- “만남에서 결혼”과 “건강한 결혼생활”로 생애주기별 이어지는 소중한 만남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연대로 결혼공감대 확산

□ 추진분야 4개 분야

- (인식개선) 이심전심 통(通)통(通) 결혼공감
 - 잘 만나보세, 두근두근 결혼장려사업
 - 청년 결혼토크 및 자녀 결혼공감 교육 운영
 - 「달달 연애·결혼·중매이야기」 공모이벤트 및 희망달서 연재
 - 두근두근 페스티벌
- (미혼남녀 만남) 청년들의 달래(來)달샘 데이트
 - 결혼원정대 모집
 - 고고미팅 운영
 - 썸남썸녀 데이트 & 보고 또 보고 데이트
 -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day)
-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 함께 여는 건강가정 온(溫) 달서 조성
 -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 운영
 - 웨딩셀프과정 및 커플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공공장소 예식장 연계
- (탄탄한 민·관협력) 민·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
 - 결혼장려추진협의회 운영
 - 결혼문화 확산 및 홍보 강화
 - 결혼친화서포터즈단, 새마을커플매니저봉사단
 - 민관협력 확대로 지역연대

어린이집 현황

(2025. 1. 1. 현재)

합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227	54	18	2	71	74	8

 2025년 어린이집 지원 사업

○ 교재교구비

- 지원대상: 지원 시점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교재교구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기준

(※ 2025년 기준)

아동현원	9인 이하	10~20인 이하	21~39인 이하	40~60인 이하	61인 이상
지급액	720천원	732천원	744천원	753천원	775천원

○ 차량운영비

- 지원대상: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대자연, 한누리, 아이사랑, 하나)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200천원/차량당/월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지원대상: 공공형 어린이집 25개소

※ 평가를 받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집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40만원	기본보육반 각 1개반당	○ 현원 1명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방과후, 야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 현원 6인 이상인 반(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 현원 8인 이상인 반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환경 개선비	2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 기준 (방과후 아동 제외)

○ 근무환경개선비

- 지원대상: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또는 평일 4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 제외자: 누리과정 교사, 대표자 겸 교사, 원장 겸 교사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130천원/인(4시간), 260천원/인(8시간)

○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 누리과정 담임수당
 - 지원대상: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260~360천원/인
- 누리과정 운영비
 - 지원대상: 만 3~5세 아동 수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50천원 정도/인

○ 어린이집 인건비

- 지원대상: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장애전문(통합), 야간연장어린이집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기준표 적용

구 분	국공립 및 법인 · 단체등	민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비 고
원장	80%	80%	80%	
보육교사	영아 80%, 유아 30%	영아 80%	80%	
특수교사	-	-	80%	
조리원(사)	100%(1명)	100%(1명)	100%(1명)	
치료사	-	-	100%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24개월~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23.1.1.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지원)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산출식: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 지원시기: 매월 25일
- 지원금액: 100,000원

○ 부모급여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지원기준: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1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현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현금 지급
- 지원시기: 매월 25일

○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2025. 3월 기준)

연령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24시간	
만0세(2024.1.1. 이 후)	540,000원	810,000원	
만1세(2023.1.1.~12.31.)	475,000원	712,500원	
만2세(2022.1.1.~12.31.)	394,000원	591,000원	
만3세(2021.1.1.~12.31.)	280,000원	420,000원	
만4세(2020.1.1.~12.31.)	280,000원	420,000원	
만5세(2019.1.1.~12.31.)	280,000원	420,000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 지원시기: 2025. 3. ~ (매월)
- 지원대상: 관내에 3개월(90일) 이상 거주 중인 등록 외국인의 자녀(0~2세)
- 지원금액: 0~2세아 부모 보육료의 70% 지원

○ 어린이집 개보수·장비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기준: 개보수: 30,000천원, 장비비: 2,000천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 지원대상: 평가제 기준 충족 장애전문 어린이집(대자연, 한누리, 아이사랑, 하나)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기준: 2,000천원/개소
-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 교구 및 사무용품 구입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

○ 장애아 어린이집 교사 특별수당

- 지원대상: 평가제 기준 충족 장애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기준: 특수교사 140천원/인, 치료사 160천원/인
- * 장애전문: 대자연, 한누리, 아이사랑, 하나
* 장애통합: 큰별, 효성, 상록수

○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 지원대상: 보육교사(일반종사자 제외)
 - * 제외자: 대표자 또는 원장 겸 교사, 장애아 특수교사 수당 수급자
- 지원자격: 평가인증 어린이집 재직 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금액: 120천원(1인/월)

○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 지원대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종일반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간의 보육료 차액분 지원
- 보육료 차액내역

(2025. 3월 기준 / 단위: 원)

구 분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만 3 세	280,000	378,000 (98,000)	384,000 (104,000)	
만 4 세	280,000	362,000 (82,000)	372,000 (92,000)	
만 5 세	280,000	362,000 (82,000)	372,000 (92,000)	

○ 교직원 하계연수비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지원시기: 연 1회

○ 장애아동 현장학습비

- 지원대상: 장애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기준: 어린이집별 200천원~1,500천원(어린이집별 장애아동 수 비례 차등지원)

○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 지원대상: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지원자격: 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차량(경찰서 신고필증)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금액: 80천원/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특활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대상: 국공립어린이집 59개소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금액: 1,000천원/개소

○ 장기근속 교직원 수당

-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및 4년 이상 장기근속자
- 지원자격: 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조리사(원장, 사무원 등 제외)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금액: 50천원/인(3년 이상), 20천원(4년 이상)

○ 공공형어린이집 담임교사 등 수당 지원

- 지원대상: 동일 공공형어린이집에 및 4년 이상 장기근속자
- 지원자격: 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조리사(원장, 사무원 등 제외)
- 지원시기: 매월
- 지원금액: 20천원

○ 어린이집 평가 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법인단체)·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유효기간(3년) 만료가 도래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시설의 개·보수, 영유아용 보조설비, 보육실 환기·청결에 필요한 장비시설, 안전시설 및 설비, 고농도 미세먼지 및 지진 발생시 필요한 장비
- 지원금액: 65,000천원

(단위: 천원)

아동 정원(현원)	지 급 액	비 고
100인 이상	3,000	
61인 이상~ 99인 이하	2,500	
40 ~ 60인 이하	2,200	
21 ~ 39인 이하	1,300	
20인 이하	900	

※ 보조금 신청시점에서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50% 미만 현원기준, 정원총족률 50% 이상 정원 기준 차등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어린이집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아동
- 공제상품 및 공제료
 - 영유아관련 상해 및 배상공제: 종일반 아동 1인당 4,890원, 방과후 아동 1인당 3,990원
 - 돌연사증후군 특약: 영유아 1인당 300원
 - 제3자 치료비 특약: 영유아 1인당 490원
- 보장기간: 2025. 3. 1. ~ 2026. 2. 28.

□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2024. 12. 31. 현재)

명칭	위치	전화번호	원장	교직원수	정원	특성
AK아이터	월배로11길 33 (진천동)	053-634-5115	김경희	19	51	일반
The 숲	갈밭로 33 (대곡동)	053-636-6300	이숙희	13	47	일반
고운꿈	월서로3길 15 (상인동)	053-637-1007	김승주	10	30	일반
고운별	대명천로 101 105동 1층 (본리동)	053-621-2770	이창훈	9	30	야간연장
금봉	야외음악당로39안길 61 (두류동)	053-656-7181	이지안	12	67	야간연장
꿈동산	성지로 12 (용산2동)	053-587-2380	김명선	8	25	일반
다솜	상화로 370 (상인동)	053-638-0536	한정희	16	41	야간연장 시간제
다원	조암로10길 11 (월성동)	053-635-5633	이재순	10	35	일반
달서	대명천로8길 10 (성당동)	053-622-8871	이성남	11	45	24시간
달서SK뷰	용산로 40(본리동)	053-555-6600	윤준수	18	77	일반
더샵센트럴	당산로 17 (본리동)	053-521-5285	박경선	11	48	일반
두류파크스위첸	파도고개로 70 (두류동)	053-657-1358	정원례	12	45	일반
라온디엘	월배로 159(진천동)	053-633-7742	백정선	7	45	일반
라온센텀	진천로16길 26 (진천동)	053-643-5853	곽문숙	14	42	일반
라온키즈	한들로 55 302동 1층 (장기동)	053-525-0544	유선영	10	31	일반
로사	월성로 77 (월성동)	053-634-8298	강경화	17	84	일반
모아엘가	상화북로 162 (상인동)	053-632-0162	이현진	9	33	일반
미리내	감삼길 99(감삼동)	053-562-1793	이효숙	15	71	일반
미리샘	한실로 134 (도원동을)	053-637-5546	김주희	8	41	일반
봄소리	송현로7길 9 (상인동)	053-270-9588	김규리	10	33	일반
빌리브	와룡로 186 (감삼동)	053-563-0131	우수경	12	42	일반
사랑별	월성로 132 (월성동)	053-641-4500	김현미	13	42	일반
상인화성파크	송현로7길 10 (상인동)	053-639-9777	박성희	11	31	일반
서한	한실로6길 123 (대곡동)	053-631-3111	조민정	11	47	일반
성서전석	신당로 56 (신당동)	053-584-7683	김혜화	12	45	일반
수목원풍경채	갈밭남로 12 (대곡동)	053-642-2020	김상숙	19	55	일반

명칭	위치	전화번호	원장	교직원수	정원	특성
수자인 누리	구마로230 (송현동)	053-719-3185	김지영	9	42	일반
수자인 다운	구마로230 (송현동)	053-651-6540	강숙자	11	42	일반
신당	신당로 55 (신당동)	053-586-1295	정미경	9	30	일반
아람	한실로 30 (도원동)	053-638-5012	김경숙	10	38	일반
아이멘토	조암로6길 20, 101호(월성동)	053-295-3334	이정미	11	35	일반
아이빛	조암남로 182(진천동)	053-635-7400	김정자	12	43	일반
아이솔	월배로5길 76 (유천동)	053-638-5582	박효숙	12	45	일반
알짬	도원로 45, 414동 103호(도원동)	053-631-0151	김순미	8	20	시간제
에일린의뜰	와룡로 254 (죽전동)	053-563-7801	이미지	13	49	일반
우리아이	용산로14길 39 (장기동)	053-552-5252	김희영	22	106	일반
월배	상화로9길 102-10 (진천동)	053-632-0525	신지영	16	49	야간연장
월배삼정	조암남로32길 40 (대천동)	053-632-3240	원영순	19	97	일반
월배힐스테이트	조암남로 132 (월성동)	053-632-5408	이현숙	8	19	야간연장
월성무지개	학산로7길 39 (월성동)	053-638-1127	김진	8	45	일반
월성삼정에듀파크	월성로 100 (월성동)	053-716-3690	정주희	17	55	일반
월성이편한	조암남로 10 (월성동)	053-259-8500	김순덕	11	41	일반
으뜸	선원로 122 (이곡동)	053-581-0016	진점숙	9	30	일반
정우	중흥로12길 58 (송현동)	053-626-4380	공현희	10	40	시간제
조은	당산로45길 95 (감삼동)	053-562-0266	하귀명	10	40	야간연장
캐슬	장산남로 33 (용산동)	053-563-0079	최경순	10	42	일반
큰별	선원로23복길 16-10 (이곡동)	053-581-4168	최경숙	14	59	야간연장 장애통합
큰사랑	월배로75길 132 (송현동)	053-656-3232	천원옥	28	91	야간연장 시간제
풍경그린M	갈밭남로 64 (대곡동)	053-247-7770	정승혜	12	39	일반
하늘꿈채	조암남로16길 19(월성동)	053-631-3924	이선정	12	35	일반
하늘별	용산로 160 (용산동운)	053-565-5799	정재영	11	35	일반
한별	이곡공원로 33(이곡동)	053-588-5008	정태옥	12	43	일반
호정	갈밭남로 17 (대곡동)	053-710-6030	박준옥	15	63	일반
효성	송현로 113 (송현동)	053-636-4363	이순혜	13	45	장애통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선정방법: 선정공고 →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기간: 5년 (기간 만료 시 재위탁 가능)
- 위탁운영 현황

시설명	위탁운영체(자)	원장	위탁운영 기간	비고
AK아이터	개인	김경희	2024.3.1.~2029.2.28.	
The 숲	개인	이숙희	2022.5.1.~2027.4.30	
고운꿈	개인	김승주	2021.11.1~2026.10.31	
고운별	(사회복지법인)금빛	이창훈	2022.7.1.~2027.6.30.	
금봉	전석복지재단	이지안	2022.12.1.~2027.11.30.	
꿈동산	개인	김명선	2022.12.1.~2027.11.30.	
다솜	개인	한정희	2020.11.1~2025.10.31	
다원	(사회복지법인)도원재단	이재순	2022.5.1.~2027.4.30	
달서	(사회복지법인)본영재단	윤준수	2023.12.1.~2028.11.30.	
달서SK뷰	개인	이성남	2024.8.1~2029.7.31	
더샵센트럴	개인	박경선	2020.11.1~2025.10.31	
두류파크스위첸	개인	정원례	2023.1.1.~2028.12.31	
라온디엘	개인	백정선	2024.11.1.~2029.10.31.	
라온센텀	개인	곽문숙	2022.7.1.~2027.6.30.	
라온키즈	개인	유선영	2023.2.1.~2028.1.31.	
로사	(복)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강경화	2024.9.1.~2029.8.31	
모아엘가	개인	이현진	2020.9.1~2025.8.31	
미리내	개인	이효숙	2023.3.1.~2028.2.29.	
미리샘	개인	김주희	2020.11.1~2025.10.31	
봄소리	개인	김규리	2023.3.1.~2028.2.29.	
빌리브	개인	우수경	2022.12.21.~2027.12.20.	
사랑별	(사회복지법인)궁전	김현미	2020.10.1~2025.11.31	
상인화성파크	개인	박성희	2022.3.1.~2027.2.28.	

시설명	위탁운영체(자)	원장	위탁운영 기간	비고
서한	조민정(개인)	조민정	2024.9.1.~2029.8.31	
성서전석	전석복지재단	김혜화	2021.11.1~2026.10.31	
수목원풍경채	개인	김상숙	2020.3.1~2025.2.28	
수자인 다온	개인	강숙자	2024.6.1~2029.5.31	
수자인누리	개인	김지영	2024.6.1~2029.5.31	
신당	(복)가정복지회	정미경	2024.9.1.~2029.8.31	
아람	개인	김경숙	2020.11.1~2025.10.31	
아이멘토	개인	이정미	2023.12.1~2028.11.30	
아이빛	개인	김정자	2021.4.1.~2026.3.31.	
아이솔	개인	박효숙	2022.3.1.~2027.2.28	
알짬	개인	김손미	2022.12.1.~2027.11.30.	
예일린의뜰	개인	이미지	2024.5.1~2029.4.30	
우리아이	개인	김희영	2023.3.1.~2028.2.29.	
월배	개인	원영순	2023.12.1.~2028.11.30.	
월배삼정	개인	신지영	2022.3.1.~2027.2.28.	
월배힐스테이트	가정	이현숙	2024.9.1.~2029.8.31	
월성무지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김미경	2021.11.1~2026.10.31	
월성삼정에듀파크	개인	정주희	2022.8.1.~2027.7.30.	
월성이편한	개인	김순덕	2021.11.1~2026.10.31	
으뜸	개인	진점숙	2021.11.1~2026.10.31	
정우	개인	공현희	2024.3.1.~2029.2.28.	
조은	개인	하귀명	2024.3.1.~2029.2.28.	
캐슬	개인	최경순	2020.11.1~2025.10.31	
큰별	(복)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최경숙	2023.12.1.~2028.11.30.	
큰사랑	개인	천원욱	2023.3.1.~2028.2.29.	
풍경그린M	개인	정승혜	2020.3.1~2025.2.28	
하늘꿈채	개인	이선정	2023.12.1.~2028.11.30.	
하늘별	개인	정재영	2020.11.1~2025.10.31	
한별	개인	정태옥	2020.11.1~2025.10.31	
호정	(사회복지법인)청아	박준옥	2024.3.1.~2029.2.28.	
효성	(복)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이순혜	2024.9.1.~2029.8.31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적용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 기존 어린이집의 변경 인가

□ 주요내용

- 보육수요와 공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수요 파악: 전분기 말일 기준으로 이용권역별(행정동) 주민등록 아동인구에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영아, 유아)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분기 초 보육 수급률에 반영
- 보육공급 파악: 전분기 말일 기준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정원수를 산정
- 인가기준: 어린이집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보육 수급이 120%를 초과하고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 처리절차(3단계)

- 인가대상자 모집공고: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분기 익월의 매 5일(연 4회)에 인가 가능지역 및 보육수요를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일간
 - 사전상담: 접수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확인
 - 대상자 선정: 심사항목 배점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정
-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
 -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거 설치 후 인가신청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 적용대상: 만 0 ~ 5세 전체 아동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부모급여 차액 또는 유아학비 지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시: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
- 지원금액
 - 보육료 (2025. 3월 기준)

연령	보육료	비고
만 0세반 (2024.1.1. 이후)	540,000원	
만 1세반 (2023.1.1.~12.31.)	475,000원	
만 2세반 (2022.1.1.~12.31.)	394,000원	
만 3세반 (2021.1.1.~12.31.)	280,000원	
만 4세반 (2020.1.1.~12.31.)	280,000원	
만 5세반 (2019.1.1.~12.31.)	2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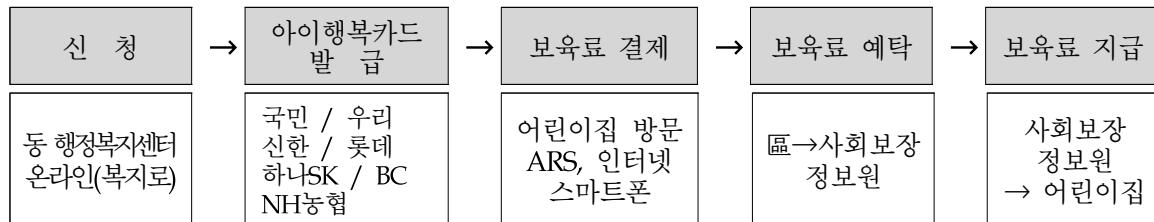
- 양육수당: 매월 25일경 계좌입금

연령	24개월 ~ 86개월 미만
지원금액	100,000원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족학연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기간 산출식: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7년의 2월까지 지원

□ 보육료 지급 절차



□ 관련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2025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

□ 적용대상: 만 2세미만 아동

□ 주요내용

○ 정의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 또는 부모급여 지원

○ 2025년 지원금액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현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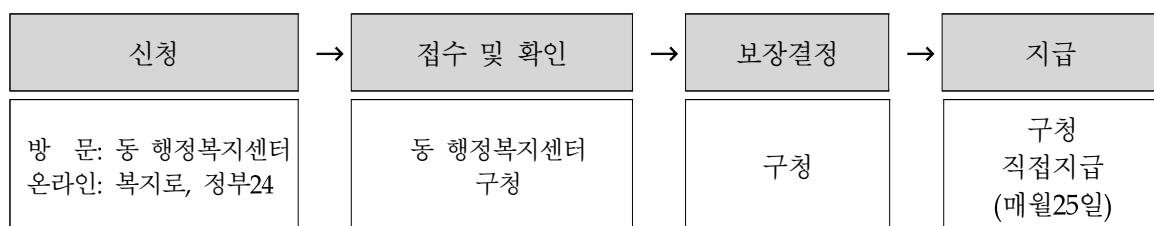
○ 지급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소급지원 불가)
- ※ 부모급여 현금 바우처 간 중복금지, 변경시 신청 필요

○ 지급방식

- 부모급여(현금): 1인당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계좌이체
- 부모급여(보육료): 보육료 전액,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로 결제)으로 지급

□ 보육료 지급 절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방법

- 정기 지도점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 수시 지도점검: 민원제보 등에 의한 시설 수시 점검
- 특별(기획)지도점검
 -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이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분야(보육료 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 위반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시정 또는 변경명령(법 제44조)
- 비용 및 보조금 지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법 제40조)
 - 시설의 운영정지 · 폐쇄조치 등
 - : 위반행위에 따라 운영정지 1년 이내 및 시설폐쇄
 - (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 ※ 운영정지가 영유아 ·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정금 부과 제도 도입(2011.1.2.8.시행)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0)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적용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주요내용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과과정: 3단계(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 평가결과: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 평가주기: 3년
- 위탁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처리절차(3단계)

- 자체평가: 평가대상 어린이집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현장평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에 현장평가자를 파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
- 종합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결과서 및 평가 주기를 확정

40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 보육팀

☎ 3522

□ 개 봄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가 지정된 어린이집에 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구 분

	독립반(7개소)	통합반(17개소)
제공기관	장성, 다솜, 쁘솔영재, 본영, 난나, 지니어스, 쁘사랑어린이집	그린키즈태왕, 라온, 미소, 사랑샘, 삼성, 성지 숲속, 소리나는, 스펜지, 안델센, 알짬, 연제, 용산, 우리, 위드아이, 정우, 죽전, 혜솔어린이집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6개월~2세반 영아
이용시간	09:00 ~ 18:00(평일), 주말 · 공휴일 제외	09:00 ~ 16:00(평일), 주말 ·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 9:00부터 1일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1661-9361 -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준비물: 개별준비물, 국민행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 00:00부터 2일 전 24:00까지

□ 보 육 료: 시간당 5,000원(정부지원 3,000원, 본인부담 2,000원)

□ 지원시간: 월60시간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드림스타트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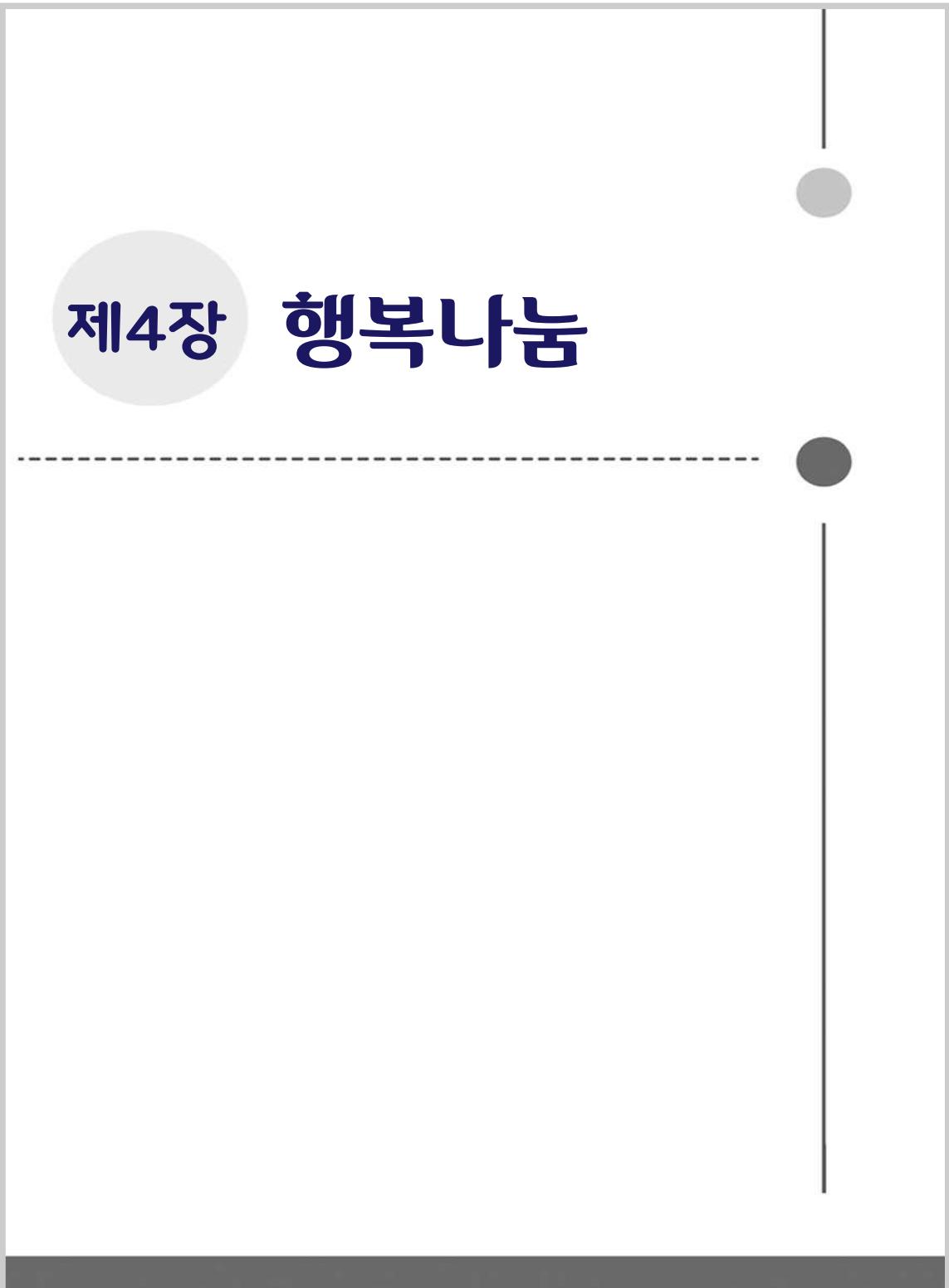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운영주체	이전개소일 (개소일)
야외음악당로 38 (성당동행정복지센터 4층)	건물 322.31m ²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등	직영	2017. 3. 6. (2009. 6. 18.)

□ 서비스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시점(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
아동(사례회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 기존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보호조치 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이관하고,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개입 종결되었음을 안내

□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신체/건강분야: 건강검진, 영양교육, 태권도 교실, 안경지원 등
 - 인지/언어분야: 영유아 교구지원, 학습지원, 독서지도, 환경교육 등
 - 정서/행동분야: 아동권리교육, 진로체험활동, 심리·언어 검사 및 치료 등
 - 부모/가족분야: 부모교육, 가족문화체험, 가족치료, 가족여행 등



제4장 행복나눔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후원자)을 발굴·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체감도 향상
 - ※ 달서사랑 365운동
 -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달서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기부 운동

□ 주요내용

- 후원자(개인, 기업체, 단체 등)를 수시 발굴하여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후원금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후원사업 내용

추진분야	추진내용	연계기관	2025년	지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관계회복 (3)	달서아이! 첫 응원 통장 (미훈모시설 아기 첫 통장 만들어 주기)	행복나눔과	신규	6명
	배워서 아이주는 달서, 자녀병법 (긍정양육 코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신규	20가구
	건강생활은 패키지 검진부터(사업명변경)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변경	20명
3개 사업 19,040천원				
행복아이 만들기 (2)	청소년 요술램프통장	행복나눔과	계속	50명
	디딤씨앗 통장 지원사업	행복나눔과	변경	25명
2개 사업 33,000천원				
청장년 지원 (3)	청·장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계속	40명
	사랑의 백미 지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변경	1,020명
	건강 UP, 영양제 지원사업(사업명 변경)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변경	250명
3개 사업 65,000천원				
어르신 및 통합돌봄 (2)	찾아가는 달서 한방 주치의	성서재가노인돌봄센터	신규	80명
	무료급식 행복나눔밥상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변경	2,400명
2개 사업 26,000천원				
환경을 생각하는 ESG 사업 (3)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바른먹거리 운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계속	300명
	사랑의 손뜨개 캠페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변경	1,000명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 전기제품 교체 사업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규	100명
3개 사업 45,000천원				

행복 마을 만들기 (4)	지역복지공모사업	행복나눔과	계속	12개기관
	지역사회 복지포럼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	계속	200명
	후원자 지정 저소득층 정기 후원	행복나눔과	변경	180명
	희망온돌 연탄 나눔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신규	40가구
4개 사업 80,000천원				
복지위기 대응 시스템 (1)	열려라 달~문~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200명
1개 사업 30,000천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	찾아가는 뽀송뽀송 이불 빨래방 운영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2개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변경	1,000명
	온기가득, 희망반찬마실&돌봄사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변경	2,000명
2개 사업 40,000천원				
자원봉사연계 (2) (개별모금)	달서효나눔축제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변경	400명
	희망+김장나눔 한마당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변경	1,000명
2개 사업 42,000천원				
기타 맞춤형복지 (1)	저소득층 일시후원(공무원1% 등) 복지시설 및 단체 지정 후원 등	행복나눔과, 동, 복지시설 등	계속	500명
1개 사업 50,000천원				

□ 참여방법

- 달서사랑 365운동 신청서(달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작성 후 계좌 송금
(iM뱅크 040-12-000537, 예금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금액: 3,000원~ (정기/일시 가능)
- 문의처: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T.667-0530)
행복나눔과 나눔협력팀(T.667-3671~3, 3677)

□ 사업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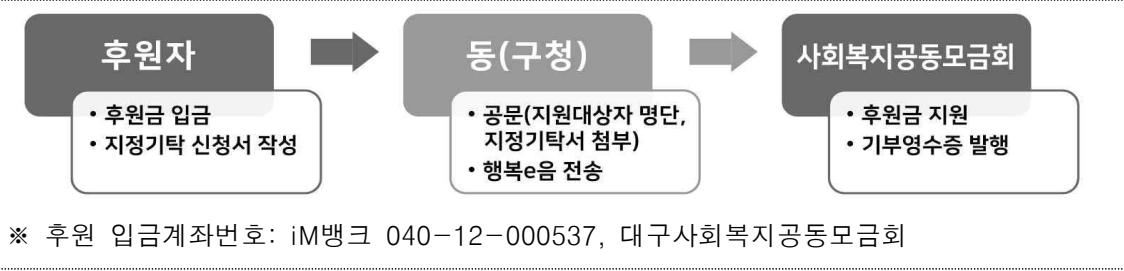
- 후원금(현금)이나 후원품(현물)을 기부받았을 경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기부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 지원대상

- 개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기관: 사회복지관, 시설, 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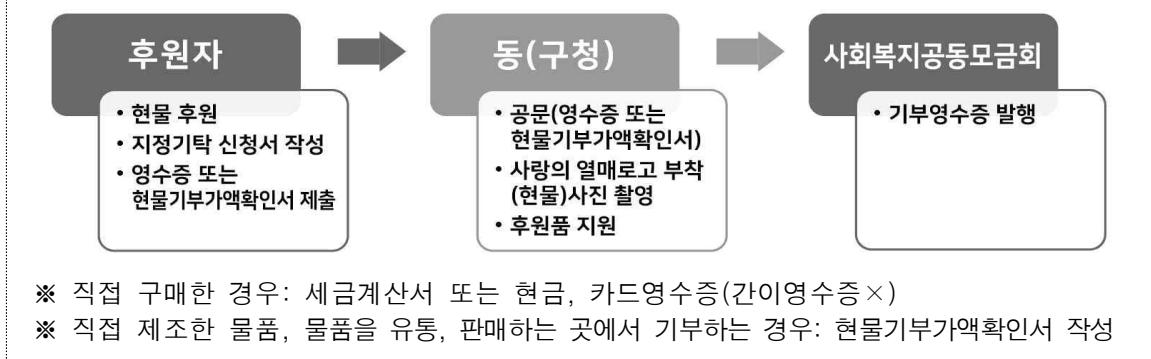
□ 지정기탁처리 절차

- 현금기부



※ 후원 입금계좌번호: iM뱅크 040-12-000537,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현물기부



□ 참고사항

- 기부처: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iM뱅크 040-12-000537
- 문의처: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T.667-0530)
행복나눔과 나눔협력팀(T.667-3672, 3677)

□ 사업개념

- 저소득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연결하여 학습, 정서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

□ 사업대상

- 멘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아동 · 청소년
- 멘토: 대학생 자원봉사자

□ 주요내용

- 활동횟수: 주1회(월4회) 1~2시간
- 추진방법: 멘토와 1:1결연하여 멘티 가정에 방문하여 멘티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학습지도: 영어, 수학, 국어 등 부족한 교과목 지도
 - 재능지도: 미술, 피아노, 스포츠 등 예체능
 - 문화체험 및 진로활동, 심리 · 정서 지원 등

□ 참여방법

- 멘티(저소득 아동 · 청소년): 동(洞) 멘토링이 필요한 대상가정 추천 → 區(행복나눔과) 상담 후 멘토(자원봉사자) 결연
- 멘토(자원봉사자): 區(행복나눔과) 홈페이지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선정 → 멘티 결연 →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OT → 봉사활동 추진

□ 모집기간: 연 2회(1월, 8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와 꿈이음 멘토가 관계망을 형성하여 학교생활 적응강화 및 기초학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대상

- 멘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 멘토: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 주요내용

- 활동횟수: 주1회(월4회) 1~2시간
- 추진방법: 멘토와 1:1결연하여 멘티 가정에 방문하여 멘티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언어능력 향상: 한국어교육, 독서지도 등(초등 저학년 중심)
 - 학습능력 향상: 국어, 영어, 수학 등 멘티의 부족한 과목 지도
 - 정체성 향상: 한국문화알기, 문화의 다양성 이해하기
 - 사회성 향상: 공연관람, 유적지체험 등 그룹별 문화 활동, 또래상담

□ 참여방법

- 멘티(다문화 아동·청소년): 동(洞), 아동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멘토링이 필요한 대상가정을 추천 → 区(행복나눔과)에서 상담 후 자원봉사자 결연
- 멘토(자원봉사자): 区(행복나눔과) 홈페이지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선정 → 멘티 결연 → 다문화 이해 교육 및 OT → 봉사활동 추진

□ 모집기간: 연 2회(1월, 8월)

□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과 주민리더가 파트너가 되어 1인세대 돌봄 및 그린리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그린리더로 양성

□ 사업대상: 주민리더(복지달인),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돌봄어르신 등

□ 주요내용

- 활동횟수: 월 2~4회 정도
- 사업내용
 - (돌봄공동체) 주민리더와 외국인주민 활동자를 결연, 월 2회 정도 돌봄 어르신 가정에 방문
 - (그린리더활동)
 - (리더양성) 지속가능발전 교육, 탄소중립실천 활동(환경자가점검표 등), 구정통보 등
 - (환경교육) 제로웨이스트(샴푸바, EM세제 등), 탄소중립(테라리움 등), 업사이클링 (일회용컵 화분만들기 등) 교육 등
 - (환경실천) 플로깅 1회, 환경부스 운영 1회(다문화축제) 등
 - (성과공유) 성과공유 및 평가 등
 - (나눔활동) 절기별 문화체험 및 나눔(추석명절, 온기나눔 꾸러미 등)
 - (인센티브) 선진지 견학, 그린리더 수료증, 우수 활동가 표창 등

□ 모집방법

- 주민리더: 洞 협의체, 복지통장, 각급 단체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복지교육 이수한 자
- 외국인주민: 동(洞), 대구달서구가족센터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한국어 가능) 추천→ 匸(행복나눔과)에서 상담 후 자원봉사자 결연
- 1인 세대 및 노인세대: 동(洞)에서 대상자 추천

□ 모집기간: 연 1회(2월)

□ 사업개념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저소득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주요내용

- 공연문화 객석나눔

- 분야: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 놀이공원 등
- 지원내용: 공연기획사, 공연장과 연계하여 객석 일부를 후원받아 무료 관람기회 제공

- 사랑의 안경나눔

- 추진시기: 매년 8월(1회 정도)
- 내용: 여름방학 기간 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안경 지원

□ 참여방법

- 동(洞)에서 맞춤형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받아 匸(행복나눔과)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후원품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탁 처리

□ 사업개념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병원을 발굴하여 의료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 사업대상

- 의료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 협약 의료기관

- 124개 병·의원(준 종합병원, 산부인과, 치과, 안과, 한의원, 기타) / 1개 달서구약사회

□ 주요내용

- 행복나눔 수술 & 진료서비스(수시)
 - 빈곤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생 시 적기에 의료 지원
 - 정형외과(인공관절), 신경외과(디스크), 치과(완전틀니, 등), 안과(백내장), 산부인과(분만), 항문(치질), MRI 검사 등
-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연 1~2회)
 - 아토피, 희귀난치성, 저성장 등 허약한 아동·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네 한의원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 및 한약 지원
- 건강생활은 패키지 검진부터 「종합건강검진」(4.~12월)
 - 위, 대장, CT, 초음파 등 종합건강검진(1인 20만원 정도) 전액 지원
 - 연계병원: 나사렛병원, 삼일병원

□ 참여방법

- 동(洞)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추천
 - ※ 대상자의 질환 및 복용 약 확인 협조
- 匸(행복나눔과)에서 병원과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 통보

□ 자원봉사 활동이란

- 자원봉사는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다시 그 힘이 사회의 발전적 에너지로 배가되어 모두에게 긍정적 에너지로 되돌아오는 창조적 활동임
- 자원봉사활동 원칙: 자발성, 지속성, 비영리성, 무보수성, 공익성, 협동성

□ 1365 자원봉사 등록

- 등록시스템: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1365 자원봉사포털'은 2010년 11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전국 자원봉사 통합프로그램으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신청, 자원봉사실적 확인, 확인서 출력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1365' : 1년 365일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 등록
 - 인터넷 이용: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회원가입
※ 봉사지역을 반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선택

□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1일 8시간이내 인정 원칙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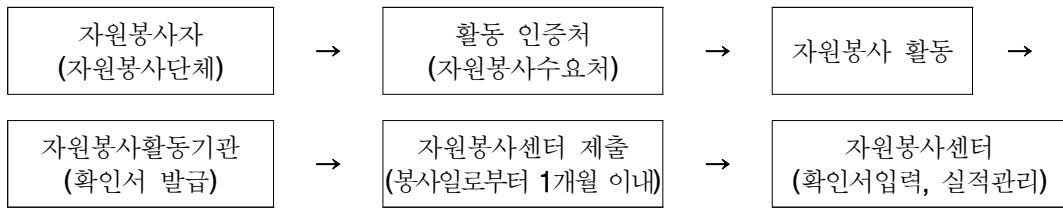
구 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 출발	센터 등 도착	귀가
인 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 차량봉사의 차량 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4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과정상의 중식, 간식시간은 봉사활동시간에 포함
- 자원봉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된 '확인서'만 인정
 - 단, 1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자원봉사 인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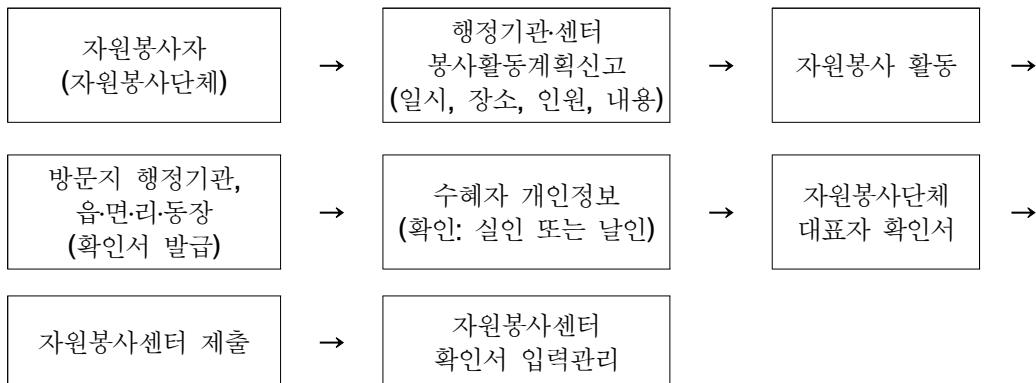
□ 자원봉사 활동인정 처리절차

- ‘자원봉사활동 결과확인서’ 발급 제출: 1일 8시간이내

- 원 칙



- 예 외



□ 자원봉사자증 및 자원봉사통장 발급

- 발 급 처: 달서구자원봉사센터(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자원봉사자증: 자원봉사 누적실적 50시간 이상인 자

- 자원봉사통장: 자원봉사활동 1건 이상인 자

- ◆ 자원봉사통장 정리기 설치현황

구분	설 치 장 소	도로명주소	개수
1	달서구자원봉사센터(진천동행정복지센터 4층)	진천로9길 33(진천동)	2
2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로 56(신당동)	1
3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상화로 371(상인동)	1
4	달구벌종합복지관	달구벌대로 291길 100(용산동)	1
5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송현로 113(송현동)	1
6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월성로 77(월성동)	1
7	본리종합사회복지관(본리동행정복지센터 4층)	당산로 37-14(본리동)	1

□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운영

- 설치장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진천동 행정복지센터 4층)
- 우수 자원봉사자 등재: 118명
 - 자원봉사 10,000시간 이상: 24명(사진, 성명, 소속)
 - 자원봉사 5,000~10,000시간 미만: 94명(성명, 소속)

□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지원

- 접수처: 대구시·구·군 자원봉사센터
- 가입대상: 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 보장금액

구분	상해사망/ 후유장애	상해입원/ 통원치료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구내 치료비	화상·골절 진단/수술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금액	2억 원/ 최대2억 원	일7만원/ 일5만원	2억 원	1억 원 한도	2백만원	5백만원

※ 2024년 종합보험 보장기간(2024. 5. 1.~2025. 4. 30.) 이후 일부 보장내역 변동 가능(삼성화재보험)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용

- 이용대상: 봉사활동시간 누적 5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할인혜택: 전체품목의 5~30%정도(통상 5%)
- 가맹점 현황: 121개소 - 市 전체 893개소

계	음식점	미용	안경점	꽃집	자동차정비	목욕업	세탁업	기타
121	24	13	11	8	12	5	4	44

※ 상세정보: 【달서구청 홈페이지】 - 【자원봉사】 - 【자원봉사 인센티브】 - 【자원봉사할인가맹점】에서 확인 가능

□ 기타

- 통장 출시 심사기준에 자원봉사 점수 30% 반영
- 달서구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직전 분기 말 기준 1년간 누적 50시간 이상) 감면혜택
 - 대구시 공영주차장: 자원봉사활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일 무료 주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市 50%, 區 30%)
 - 달서별빛 캠퍼스(20%) 및 달서아트센터 · 달서가족문화센터 · 청소년수련관운동장(10%)감면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 접속방법: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dgvolunteer.co.kr) → 온라인자원봉사교육
- 교육내용: 자원봉사 심화교육 33강좌(강좌당 봉사시간 20분)
안녕, 캠페인 시민교육 34강좌(강좌당 봉사시간 10~60분 인정)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과정명	교육 내용	주관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5. 4~10월, 상·하반기 ○ 장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대상: 달서구민 누구나, 자원봉사단체 리더 ○ 내용: 자원봉사 전문화(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자원봉사 센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5. 3~12월, 15회(매월 2·4주 토요일, 3시간/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여름스쿨(7~8월) ○ 장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연간 450명 (회당 30명) ○ 내용: 자원봉사 기초교육, 재능기부교육, 자원재활용교육 등 	"
기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5. 1~12월, 50회 정도(수시) ○ 장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및 외부기관(학교 등) ○ 대상: 달서구민 누구나 ○ 내용: 자원봉사 의미, 마일리지, 종합보험안내 등 	"
심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5. 1~12월, 120회 정도(수시) ○ 장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및 외부기관(시설) ○ 대상: 기존 자원봉사자 ○ 내용: 자원봉사 심화교육(자원봉사대학 등) 및 전문기술교육 등 	"
자원봉사 재주꾼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5. 3~10월 ○ 인원: 100명(과정별 20명) ○ 주기: 과정별 주 2회 4주 과정(총 16시간) ○ 장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과정: 5개 과정+심화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납정리, 페이스페인팅, 동화구연, 타로카드, 캘리그라피) ○ 내용: 과정별 교육수료 후 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수요처와 연계 	"

□ 달서 효나눔 자원봉사 DAY

- 시기 및 장소: 4월, 학산공원 운동장
- 참여인원: 500명 정도(자원봉사 가족·기업체·봉사단체·개인, 공공기관 등)
- 추진내용: 효나눔 꾸러미 500개 제작
 - 효나눔 꾸러미: 카네이션, 두유, 생필품 등을 담은 상자
 - 자원봉사자가 만든 사랑의 효나눔 상자를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세대에 전달
- 주관: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그린리더 양성교육

- 시기 및 장소: 5~11월, 달서구자원봉사센터 교육실
- 참여인원: 30명 정도(단체·가족 등 지역주민 누구나)
- 추진내용: 기후위기 대응교육, 업사이클링 교육,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 ※ 교육 수료자는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 및 환경 자원봉사활동 멘토로 활동
- 주관: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달서 희망+ 김장나눔 한마당

- 시기 및 장소: 7월/구청 구내식당, 11월/학산공원 운동장
- 참여인원: 600명 정도(기업체·단체·가족 등 지역주민 누구나)
- 추진방법: 나눔 후원자가 직접 김장을 담그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
- 주관: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달서 클린로드 데이(성서산업단지 낙엽수거)

- 시기 및 집결: 12. 6.(토) 예정, 성서체육공원 축구장(성서공단로22길 25)
- 활동구역: 성서공단 2차 산업단지 일원(10개 구역)
- 참여인원: 600명 정도(국민운동단체, 기업체, 가족, 학생, 공무원 등 지역주민 누구나)
- 추진방법: 참여 단체별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낙엽 수거지역 지정
- 주관: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개요

- 기 간: 연 중
- 중점분야: 청소년, 달서 가족(2인 이상), 어르신 분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365자원봉사포털, 달서구홈페이지
 - 전화·팩스 신청: 달서구청 자원봉사팀(667-3661~2), 달서구자원봉사센터(636-1365)
- 프로그램 내용

분 야	시 기	프로그램명	대 상	내 용	장 소
청소년	겨울방학 (1.~2월)	겨울방학 청소년 홈런티어 자원봉사	초·중·고등 학생 100명	비대면·재택 지원봉사로 양팔목 냄비받침을 제작하여 관내 노인시설에 전달	비대면· 재택
	여름방학 (7.~8월)	여름방학 청소년 홈런티어 자원봉사	초·중·고등 학생 100명	비대면·재택 지원봉사로 탄소중립관련 활동 및 제품을 제작하여 지역복지시설에 전달	비대면· 재택
	3.~12월 (매월 24주 토요일, 3시간/1회)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중·고등학생 450명 (회당 30명, 15회)	자원봉사 기초교육, 재능기부교육, 환경관련 교육 및 실습 등	자원봉사 센터
	3.~11월 (매월 13주 토요일, 3시간/1회)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활동	중·고등학생 300명 (회당 20명, 15회)	자원봉사 기초교육, 문화체험, 환경 보호 활동 등	자원봉사 센터
가 족	1.~12월	달서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6개 가족봉사단	줍깅 및 환경정화 활동, 캠페인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봉사활동	관내
	3.~12월 (6회)	가족봉사 체험스쿨	200가족 500명 정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나무 심기, 재난,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활동 및 물품 을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전달	구청강당, 비대면· 재택
	12월	희망 나눔꾸러미 가족봉사활동	40가족 100명	선착순으로 모집된 2인 이상의 가족 봉사자들이 희망 나눔꾸러미를 만들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	구청강당
어르신	5~11월 중	淸(청)·靑(청) 봉사활동	청소년 50명 어르신 50명	청소년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짊어지는 청춘 프로젝트	구청강당
	2~11월 (월2회)	달서 은빛봉사단 봉사활동	23개 봉사단 245명 정도	어르신들의 마을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각종 체험활동 후 취약계층에 전 달 등	관내

13

달서 재능&지식 나눔 자원봉사

◆ 자원봉사팀

☎ 3661~2

□ 유아·초등 재능봉사 체험교육

- 운영기간: 2025. 3~12월
 - 모집 및 일정협의: 2025. 3월
 - 교육강사 연계, 봉사실적 입력 등 사후관리: 2025. 4~12월
- 교육강사: 분야별 재능&지식 나눔자
- 참여대상: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생 1,000명 정도
- 장 소: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 과 정: (유아)마술체험 외 2개, (초등)자원봉사 기초교육 외 11개 프로그램
- 내 용: 재능&지식 나눔자가 어린이집 및 학교에 찾아가 체험 교육 실시
- 운영절차:



□ 재능&지식 나눔 뱅크 운영

- 기 간: 연 중
- 모집대상: 분야별 전문적 지식 및 재능을 갖춘 개인, 단체
- 운영방법: 재능&지식 나눔 뱅크 인력풀 재정비 및 활성화를 통해 재능지식 나눔자와 받는자(수요처)를 연계하여 봉사활동 추진
- 운영분야: 평생학습(교육), 의료, 예체능, 이미용, 기술 5대 분야
- 주 관: 달서구자원봉사센터

관련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

일반현황

(2025. 1. 1.)

최초설치일	1998. 7. 16. (2014. 8. 4. 진천동 이전)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2025. 1. 1.~2027. 12. 31.)														
지원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운영위원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예산 (백만원)	년도	계	국비	시비	구비	센터장	장 병 결														
	2024	637	33	44	560	직원	계	센터장	직원												
	2025	653	33	44	576		9	1	8												
사무실	입주건물	공공건물		사용형태	무상사용		사용면적	346.44m ²													
자원봉사 등록현황	등록인원	계		남		여	등록 단체수														
		195,571명		80,946명		114,625명	851개														
	활동 실인원	24,999명			활동 연인원	268,076명															
소식지	○ '나눔에 나눔을 더하여'(연 1회, 하반기)																				
수상실적	○ 대구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2023) ○ 대구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상(2008, 2010~2014, 2018~2019) ○ 2014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2014. 12.)																				
소재지	(우편번호) 42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9길 33 (진천동행정복지센터 4층)					전화번호	(053) 636-1365														
						팩스	(053) 639-1365														
						홈페이지	http://dalseovolunteer.com/														
						이메일	dalseovt@hanmail.net														

□ 사업목적

-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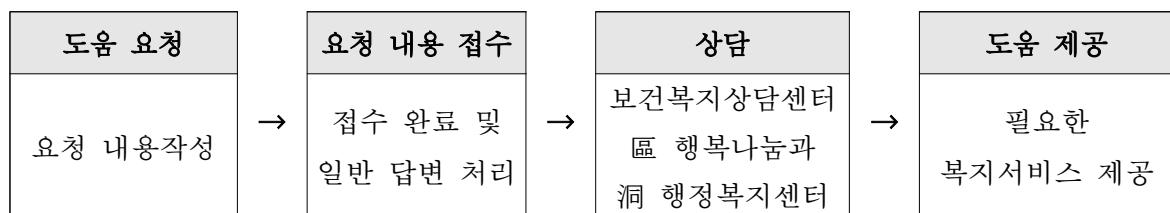
- | | |
|-------------------------------|----------------------------------|
| •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
|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

□ 신청방법

- 신청(문의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 도움 요청하기	 복지위기알림앱
-----------------	-----------------	--	---

→ 복지로(www.bokjiro.go.kr) 도움 요청 방법



□ 지원내용

-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지원(소득·재산 기준 등 충족 시)
-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목적

-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정기조사 중 지자체 발굴 연계 실시
- 21개 기관, 47종 위기정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발굴
- 47종 위기정보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위기단계를 정비하여 단계적 추진

□ 추진체계

- (洞) 공공 및 인적안전망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지원
- (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 모니터링

□ 조치사항

- (공적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신청
- (민간연계) 공적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는 민간지원 연계 추가 검토
- (비 대상) 기수급자, 소득재산초과자, 전출, 사망, 시설입소 등

□ 위기정보 세부 분류표

'22. 하반기

'23. 하반기

'24. 하반기

39종

44종

47종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

노후긴급자금 대부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반려자

□ 달서 안심 돌봄 플러스

- 사업대상: 취약계층 1인 가구
- 사업내용: 돌봄플러그를 활용한 전력량 및 조도 변화 확인으로 위험 방지
- 돌봄플러그 모니터링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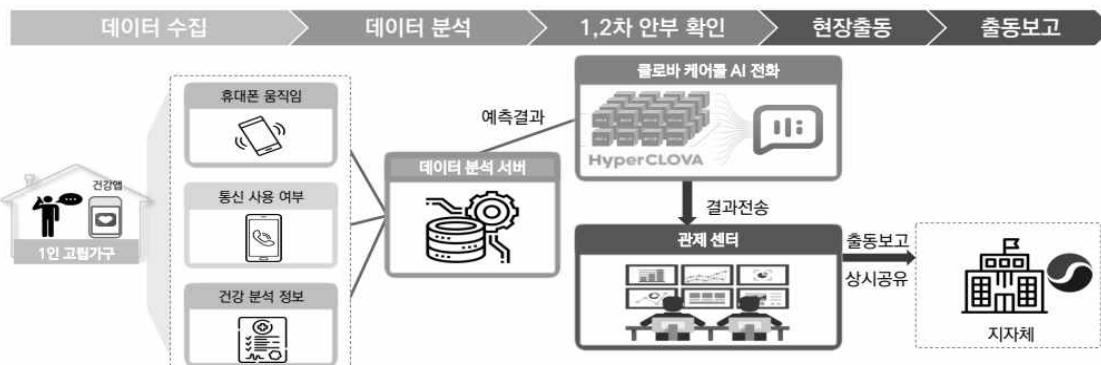
모니터링			긴급대응 조치
위험신호 발생	위험신호 확인, 문자수신	이상유무 확인	
24, 36, 50시간 주기로 위험신호 감지 시간 설정	위험신호 발생 실시간 확인 • 업무용PC: 관리자확인 • 태블릿PC: 위험신호 문자 수신	• (1차) 전화 • (2차) 가정방문	• 긴급출동 현장 확인 조치 •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연계

□ AI 안심 올케어

- 사업대상: 고독사 고위험군 취약계층 1인 가구
- 사업내용: AI케어콜 및 관제·출동 서비스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및 위기상황 대응

- (AI안부전화) 심리정서돌봄 및 안부확인, 복지혜택알림, 인공지능 기반 이상감지
- (모바일앱 활용) 스마트폰 사용 감지, 이상 상황 모니터링,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관제센터) 24시간 운영, 휴대폰 사용여부 움직임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등 읍면동 업무 지원
- (출동업무 및 현장대응) 3개 항목* 모두 충족 시 긴급 출동 및 현장 대응(문 두드림, 경비실 및 이웃확인, 소동상태 확인 및 긴급상황 시 112·119 협조요청 후 읍면동 즉시 통보), 출동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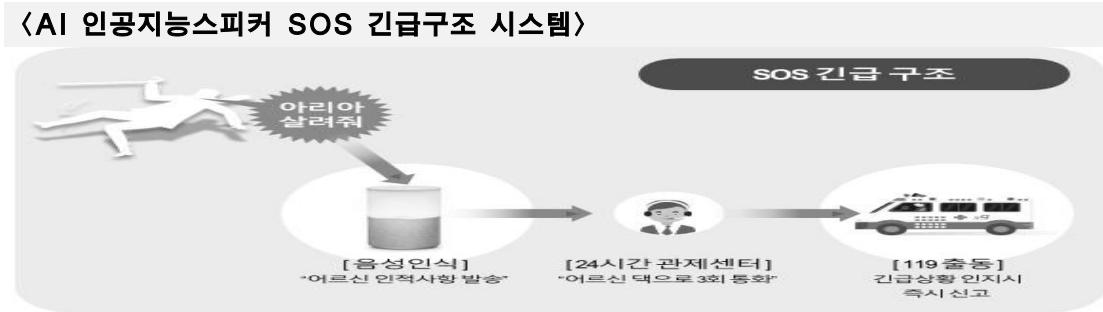
* 긴급출동 대상 항목. ① 24시간 미반응 ② 상담 전화 3회 미수신 ③ 문자 및 카톡 미확인



□ AI 인공지능 스피커

- 사업대상: 취약계층 1인 가구
- 사업내용
 - AI 스피커와 감성대화로 외로움 극복, 위기상황 시 긴급구조 요청(365일, 24시간)
 - AI 상담사가 주 2회 전화, 돌봄 대상자 안부 확인
 - 날씨, 음악, 운세, 복약 등 일정 알림 및 놀이 운동을 통한 치매 예방

〈AI 인공지능스피커 SOS 긴급구조 시스템〉



□ 달서안심복지서비스앱

- 사업대상: 주민 누구나
- 사업내용: 휴대폰에 달서안심복지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대상자가 12~24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위기 상황 알림

□ 달서복지수다방

- 사업대상: 주민 누구나
- 사업내용
 - 동별 안전지킴이 번호 통해 카카오톡 회원가입 및 카카오채널 개설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세대 주택 관리자 등 주민 온라인망 구축
 - 복지위기가구 신고, 1:1 복지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 추진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관리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자체 발굴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 가구 실태조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위험군) 분류하여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추진

□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사업유형	사업내용
안부확인	지역 내 인적안전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및 노인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ICT 기술 활용(돌봄 플러그, AI안심올케어, AI 스피커,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망 형성	공동체 공간 및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 장례 비용 지원 등

□ 고독사 예방 홍보 및 캠페인

-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홍보 부스 운영 및 거리 캠페인 추진
- 인적안전망 고독사 관련 인식개선 교육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 종합사회복지관 현황(7개소)

복지관명	소재지	연면적 (㎡)	위탁법인	위탁기간	시설장 (관장)	설치일 (전화번호)
월성	학산로7길39 (월성동)	2,79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21.12.29.~'26.12.28.(5년)	김홍렬	'91. 12. 28. (634-4113)
학산	월성로77 (월성동)	2,886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21.12.29.~'26.12.28.(5년)	김지웅	'91. 12. 28. (634-7230)
본동	송현로113 (송현동)	2,798	"	'23.1.1.~'27.12.31.(5년)	신현복	'93. 2. 25. (636-5567)
상인	상화로371 (상인동)	2,896	"	'24.7.23.~'29. 7.22.(5년)	김유정	'94. 7. 22. (641-1100)
성서	신당로56 (신당동)	2,590	전석복지재단	'23.7.29.~'28. 7.28.(5년)	김병우	'95. 8. 9. (583-1284)
신당	신당로55 (신당동)	1,247	가정복지회	'23.7.29.~'28. 7.28.(5년)	박순만	'95. 8. 9. (581-8310)
본리	당산로37-14 (본리동)	2,315	홀트아동복지회	'22.4.1.~'27.3.31.(5년)	황운용	'14. 3. 17. (563-1007)

□ 주요사업

-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복지관별 특수사업

월성	학산	본동	상인	성서	신당
심리상담 센터운영	학산행복일터 운영 문화사랑 도서관 운영	품앗이공동체 늘품 운영 푸드마켓 운영	노인웰빙 라이프센터 운영	푸드마켓 운영 다문화가정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교육 복지지원센터 운영

□ 복지관 공동 지원사업(구비 100%)

- 무료급식소 운영(주 5회) : 465,036천 원
-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주 5회) : 115,843천 원
-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분기 1회): 49,000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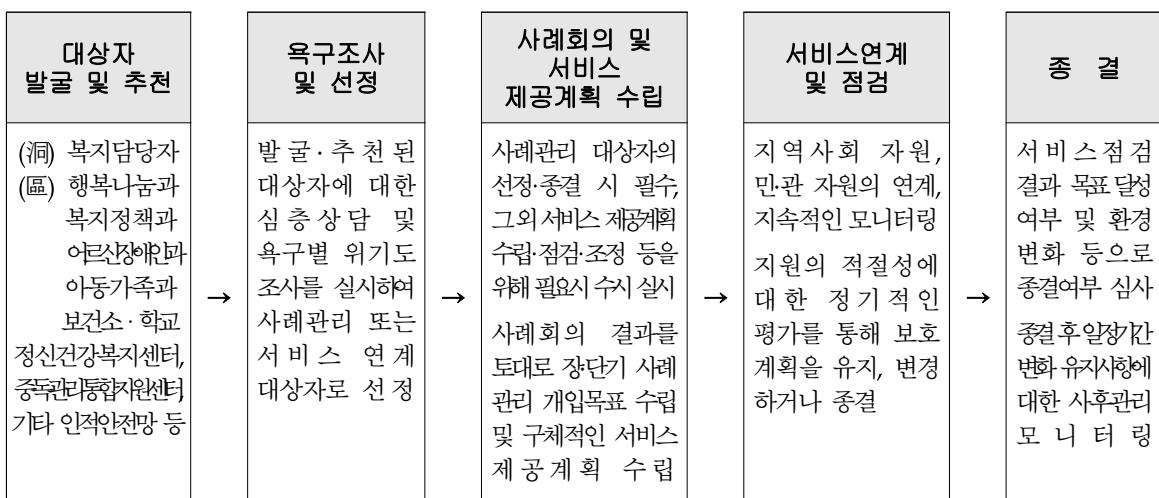
□ 사례관리의 개념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사례관리의 목표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향상
-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

□ 사례관리의 절차



※ 읍면동 초기상담 후 지역자원 부족, 협력체계가 미흡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구(區) 고난도 사례로 요청·개입 가능

- 상담 시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 기대효과

-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신속대응·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방지
- 복지대상자에게 보호의 지속성 실현, 복지대상자의 지역사회 통합 실현

□ 사업목적

- 전통적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고령인구 비율 및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1·2인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한 적극 대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07. 3. 20.~
- 사업대상: 저소득계층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및 2인 가구
- 사업내용: 복지인력 및 민간 인적안전망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안부 확인(필요시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 추진방법: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개인별 계획수립 및 주기적 안부확인, 복지욕구 파악

□ 추진현황

(2024.12.31. 기준/ 단위: 가구)

구분	총계	1인 가구							2인 가구						
		계	독거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	소년 소녀	한부모	기타	계	노인 부부	장애인	만성 질환	소년 소녀	한부모	기타
계	7,642	7,396	4,081	1,332	1,395	-	-	588	246	59	84	63	6	8	26
수급자	7,203	6,991	3,769	1,290	1,363	-	-	569	212	41	79	58	6	7	21
차상위	223	208	162	31	10	-	-	5	15	11	-	3	-	1	-
일반	216	197	150	11	22	-	-	14	19	7	5	2	-	-	5

□ 사업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 사업내용

- 이용대상: 위기상황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고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충족하며 기존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누구나

주요 위기상황

-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및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30일 이내 동안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실종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등
- ※ 단,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보충성의 원칙)

- 소득기준: 소득(전월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소득기준(안)	본인부담률	서비스시간 *일 최대 8시간 가능	시간당 단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급자, 차상위 포함)	면제	1시간	25,000
		2시간	42,000
기준 중위소득 120%~140%	10%	3시간	55,000
기준 중위소득 140%~160%	20%	4시간	68,00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00%	5시간	85,000
		6시간	101,000
		7시간	117,000
		8시간	136,000

- 지원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 재가방문형 돌봄·가사·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30일 이내 사용 권고)

□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25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②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⑥ 가구 구성원의 간병(입원, 치매,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⑦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⑧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⑨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⑩ 부모의 잊은 가출, 알콜 및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 ⑪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⑫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⑬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⑭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 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생계지원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7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기준: 입원환자에 한하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주거지원기준(대도시)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기준 (단위: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기준 (단위: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금액	127,900	180,000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그 밖의 지원기준

(단위: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 요청 시 현장 방문 및 사실 확인 후 즉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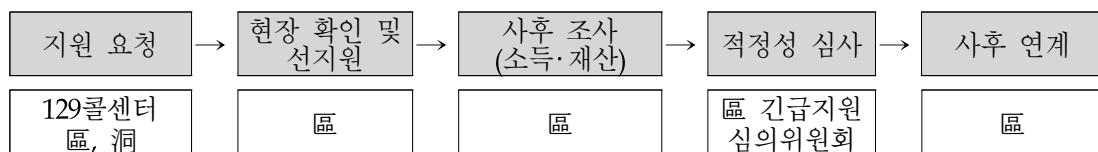
→ 사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

(부적정 판정 시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조치)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 미해소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생계·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총 6개월까지
- 주거 지원: 총 12개월까지
- 의료·교육 지원: 총 2회까지
- 그 밖의 지원: 1회 (연료비 6개월)

□ 처리흐름도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지원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 기준

(단위: 만원)

가구 규모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어 촌
재산 금액	24,100	15,200	13,000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금액(주거지원)	10,392,000	11,932,000	13,025,000	14,097,000	15,108,000	16,064,000

□ 관련근거

- 2025년 달구벌 희망복지기동대 운영계획(행복나눔과-537, 2025. 1. 8.)

□ 적용대상

- 질병 및 사고, 재난 부채로 인한 생계곤란, 실직, 기타 요구호자 등 취약계층

□ 주요내용

- 지원내용: 20~1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 금액(기준표 참조) / 연1회
- 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이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5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5,146천원 이하(4인가구 기준)
-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준용
- 지원기간: 2025. 1~12월
- 기존 공공부조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등) 우선 활용
- 공공부조제도권 외의 대상자 입원진료비는 건강주치의사업 활용 등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최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본인 부담 발생액을 고려하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미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한 의료비 발생 및 재난 발생 시 예외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불가피하게 기타 요구호자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 가능

□ 처리절차

- 동(洞): 위기가구 빌굴·상담을 통해 달구벌 희망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구·군으로 추천(신청)
- 행복나눔과: 행복e음 소득재산 연계자료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가구/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일반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기본공제액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가구/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융재산	9,588,000	11,898,000	13,538,000	15,146,000	16,662,000	18,097,000	19,482,000

지원기준표

관련근거: 「주거급여법」 제 7조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
- 2018. 10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기준임대료 (광역시)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63,000	428,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산정방법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차임을 말하며,
 - 전세 혹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함

처리절차

- 주거급여의 신청 · 접수: 洞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 區 통합조사팀
- 주택조사 의뢰: 區 통합조사팀 → LH: 주택조사 전담기관
- 주택조사의 실시: LH
- 보장 결정 및 결과 통지: 區 주거복지팀
- 주거급여 지급: 區 주거복지팀(국비 90%, 시비 7%, 구비 3%)

관련근거: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
- 수선유지 급여는 보장기관이 수립한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원 상한액 및 지원주기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지원금액(수선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지원

-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추가 지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고령자 추가 지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19년 1월부터 적용)
-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23년부터 적용)
 - * 차수판, 개폐 가능한 방법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 **관련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규정

□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6개단지 10,080세대

구 분	단 지 별	관리주체	입 주 시 기	건 립 호 수	평 형 별			
					12평	13평	15평	19평
월성 2동	월성주공 2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91. 9.	2,364	1,768	596	-	-
"	월성주공 3단지	"	'91.12.	1,482	1,333	149	-	-
송현 2동	본동주공단지	"	'92.12.	1,234	936	298	-	-
신당동	성서주공 1단지	"	'95. 5.	1,341	1,043	298	-	-
"	성서주공 3단지	"	"	835	537	298	-	-
상인 3동	비둘기아파트	대구도시개발공사	'94. 2.	2,824	2,224	-	360	240

※ 타 지역으로 수성구 지산 · 범물 · 황금지구와 북구 산격지구, 중구 남산까치, 동구 안심 · 신암 · 강남 · 연경, 달성군 옥포지구가 있음.

□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총자산 24,1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충족)을 충족한 사람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65세이상 직계 존속 부양자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처리절차**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 区 주거복지팀
- 영구임대주택 홍보 및 신청 · 접수(정기: 매년 1~2월경, 하반기: 수시): 洞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 区 통합조사팀
- 배점입력 확인 및 수정, 배점순위 산정: 区 주거복지팀
- 입주예비자 결정: 대구광역시 → 区 주거복지팀 통보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비자에게 선정여부 통보: 洞 행정복지센터
- 입주 선정자에게 안내 및 계약체결: LH 및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단, 장애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달서구(LH), 대구시(대구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입주자,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 포함)이 24,100만원 초과자, 자동차 기액이 3,708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장애인 자동차 제외), 주택소유자 등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및 부분전세주택
전 세 금 지원한도	· 광역시 9,000만원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가능
신청시기	· 매년 2월 ~ 3월경(변동가능)
대상자별표	· 신청 후 약 3개월 소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사업 시행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1670-0002), 대구도시개발공사(☎350-0300)

처리절차

- LH 및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주대상 계획 통보: 공사 → 区 주거복지팀
- 전세임대주택 홍보 및 신청 · 접수: 洞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 区 통합조사팀
- 입주희망자 등수 산정: 区 주거복지팀 → LH, 대구도시개발공사 통보
- 입주희망자 결정 및 선정여부 안내, 계약체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 관련근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주요내용:**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구분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단, 장애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p>※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달서구(LH), 대구시(대구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p> <p>※ 신청제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기입주자,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 포함)이 24,100만원 초과자,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장애인 자동차 제외), 주택소유자 등</p>
주택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형, 2형, 3형(가구원수에 맞춰 주택형 선택)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 3월경(변동가능)
대상자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후 약 3개월 소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사업 시행자)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1600-1004), 대구도시개발공사(☎350-0300)

□ 처리절차

- LH 및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주대상 계획 통보: 공사 → 区 주거복지팀
- 전세임대주택 홍보 및 신청·접수: 洞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 区 통합조사팀
- 입주희망자 등수 산정: 区 주거복지팀 → LH, 대구도시개발공사 통보
- 입주희망자 결정 및 선정여부 안내, 계약체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주요내용

- 신청시기: 연중

- 지원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자로서 신규 입주예정자 및 기존입주자

- 1순위 자격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5세이상 직계 존속 부양자(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또는 유족)·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대상주택: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 6,800세대

- 단지명: 남산까치, 신암강남, 범물용지, 지산5단지, 상인비둘기

- 지원내용: 150만원 한도, 임대보증금의 50%지원(기존입주자는 보증금 증액분 이내)

- 상환방법: 지원받은 다음 달부터 2년(24개월)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처리기간: 7일 이내

처리절차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계획수립 및 시달: 市 주택과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 접수(상시): 洞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명단 수합, 신청자격 심사 후 관련서류 제출: 區 주거복지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 市 주택과 →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대상자 계약체결 및 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 목 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및 주거상향 도모
- 자격요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추천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재산요건: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70%이하, 2인가구 60%이하, 3인가구 50%이하인 자
※ 제외: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포함)이 24,100만원 초과자, 자동차 가액 3,708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장애인자동차 제외), 주택소유자 등
-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간 거주가능)

처리절차

- 신청시기: 연중 수시
- 입주 신청: 洞 행정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053-350-0803~5)
-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 계약체결: LH

관련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주요내용

- 목적: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 70%이하, 2인 가구 60%이하, 3인 가구 50%이하인 자
- 신청시기: 연중 수시(계약까지 1개월 정도 소요)
- 임대조건

구 분	전용면적(m ²)	임대료 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하 가구: 50m²이하 · 4인 이하 가구: 50m²초과~85m²이하 · 5인 이상 가구: 85m²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300~1,000만원 · 월임대료 10~30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m²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180~450만원 · 월임대료 9~14만원 수준

처리절차

- 입주 신청: 洞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후 LH 통보: 匌 주거복지팀
- 필요서류 준비 안내: LH
- 해당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LH

□ 관련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14조(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주거상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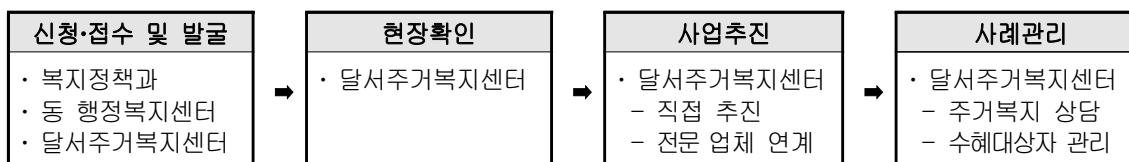
□ 시설 및 인력현황

위치	종사자	센터장	주요시설	설치일 (연락처)	위탁기관
중흥로5안길 7, 3층 (송현동)	3명 (사회복지사3)	전인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2021. 4. 1. (☎ 710-5536)	(사)자원봉사 능력개발원

□ 주요 사업내용

- 주거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 긴급주거비 지원(임대료 및 이사비,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자원 개발(이동상담소 운영, 홍보물 제작 등)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 일상생활불편 해결사업: 형광등, 수도, 문고리 교체 등
 - 깨끗한 보금자리 사업: 도배, 장판·창호 교체, 단열, 육실·주방 개량 등
 - 스마트한 우리집 사업: 거동불편세대 내 원격제어 LED 전등 설치
 - 저장강박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장강박세대 청소 및 정리, 방역 등
 - 희망 Dream 공부방사업: 주거취약 아동 공부방 조성 등
- 청·장년 중심세대 주거환경 개선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정서안정 지원

□ 운영체계



제5장 청소년



관련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추진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운영개요(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운영기간: 2025. 1~12월(1일 5시간, 주 5~6일 운영)
- 운영장소: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 운영형태: 우선순위 지원대상-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 2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등 기타 지원대상-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 내용을 기준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대상인원: 시설별 40명(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 전담인력: 시설별 3명(팀장 1, 담임 2)
- 주요내용: 학습지원, 주중체험, 생활지원, 귀가지원 등

커리큘럼 내용

학습지원 과정	주중체험 과정	주말체험 과정	특별지원 과정	생활지원
교과학습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종합스포츠, 방송댄스, 창의과학, 코딩, 드론, 예절인성, 학급회의, 진로·진학, 진로경제, 신체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진로직업체험, 문화탐방,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특강, 부모교육, 가족통합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 등·하원차량
보충학습 (숙제 및 예·복습, 독서, 멘토링, 보드게임)				

-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시설현황

【청소년수련관】

- 소재지: 상화로 420(상인동)
-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4,124.88m²(지하 1층, 지상 3층)
- 수용인원: 900명
- 층별 시설내역

구분	면적	시설내역
총계	4,124.88m ²	
지하 1층	1,522.35	수영장, 탈의실 및 사우나, 기계실 등
지상 1층	1,407.36	다목적강당, 사무실, 강의실 등
지상 2층	668.58	강의실, 어울마당(휴게공간) 등
지상 3층	526.59	댄스실, 음악실, 강의실, 등
야외시설		농구장, 야외무대, 전통놀이 체험장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 시설규모: 대지 6,612m² 건축 연면적 6,353.93m²(지하 2층, 지상 2층)
- 층별 시설내역

구분	면적	시설내역
총계	6,353.93m ²	
지하 2층	314.18	전기실, 기계실, 창고 등
지하 1층	5,475.63	청소년전용공간(창의놀이터), 주차장(195면), 화장실 등
지상 1층	335.90	청소년전용공간(창의놀이터), 화장실
지상 2층	228.22	산불감시 사무실
야외시설		풋살장(2면), 트랙, 관중석(369석)

- 관리운영** (운영비 550백만원, 구비 100%)

- 수탁단체: 계명문화대학교
- 프로그램 운영
 -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 19개반 운영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208개반 운영
 -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 226개반 운영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시설현황

【청소년문화의집】

- 소재지: 조암로 129(대천동)
-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1,541.81m²(지상 3~5층)
- 수용인원: 190명
- 층별 시설내역

구분	면적	시설내역
총계	1,541.81m ²	
지상 3층	621.84	대강당, 사무실, 청소년자치활동실, 문서고, 창고 등
지상 4층	466.83	댄스실, 음악실, 미술실, 영상제작실, 휴게홀(휴드림)
지상 5층	453.14	강의실(2), 동아리실, 창작활동실, 방과후아카데미사무실, 방과후아카데미 강의실(2)

관리운영 (운영비 410백만원, 구비 100%)

- 수탁단체: 구미대학교
- 프로그램 운영
 -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 26개반 운영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69개반 운영
 -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 47개반 운영

주요 사업내용

- 청소년동아리활성화 지원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역량강화 사업(진로·경제교육, 영상크리에이터 등) 운영
- 평생교육사업(문화강좌) 운영
- 지역사회연계사업(플리마켓, 마을축제) 운영
- 학교연계사업(외부특별교육) 운영

4

달서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 청소년팀

☎ 3227

□ 관련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운영목적

- 일시적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지원

□ 시설현황

- 시설개요

소재지	면적	종사자	시설장 (센터장)	운영기관	설치일 (전화번호)
와룡로10안길 11 (본동)	대지: 257.4 m ² 건물: 529.96 m ² (지상 4층)	9명	전명진	(사)YWCA	'99. 12. 28. (526-1318)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정보이용방, 숙소, 체력단련실 등
- 근무자: 9명(소장 1, 부장1, 상담원 4, 야간상담원1, 행정원 1, 조리원 1)

□ 운영개요(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보호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남자 청소년
- 입소정원: 15명 내외
- 입소기간: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최장 24개월)

○ 사업내용

- 생활지원: 가출청소년 단기보호 및 의식주 제공
- 건강지원: 의료서비스, 체육활동, 성교육, 금연, 음주예방교육
- 상담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거리상담
- 활동지원: 수련활동, 문화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 기타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관련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운영목적

- 청소년의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가출 등의 위기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 및 긴급 구조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시설현황

구 분	소 재 지	면 적	총사자	시설장 (센터장)	운영기관	설치일 (전화번호)
달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산로7길39(월성동)	411.79 m ² (지상2층)	14명	허세호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09. 7. 14. (638-1388)
달서구성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계대동문로11길 33 (신당동)	276.67 m ² (지상2층)	6명	"	"	'14. 4. 24. (592-1377)

운영 및 주요 내용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달서구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14명(상담사 4, 미디어 1, 동반자 9) ○ 주요시설: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사업실, 동아리실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상담, 자활, 학습관련 정보 제공 - 청소년전화, 대면상담, 집단상담 및 사이버상담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운영(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6명(센터장 1, 상담사 3, 행정원 1, 동반자 1) ○ 주요시설: 사무실, 개인 및 집단 상담실, 동아리실, 교육장(체험실습장) ○ 사업내용(구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화, 대면상담, 집단상담 및 사이버상담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육성 ·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동아리 및 멘토링제 운영

관련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영목적

-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지원

시설현황

- 시설개요(前 신당중학교 내)

소재지	면적	종사자	시설장 (센터장)	지정기관	설치일 (전화번호)
서당로 30 (신당동)	358 m ² (지상1층)	8명	허세호	달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5. 5. 12. (592-1378)

- 조직 및 인력: 8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명, 고립은둔청소년원스톱지원사업 3명)
- 주요시설: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1·2, 전용공간(사진관)

주요 사업내용(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검정고시대비반, 학습멘토링 등 학업프로그램
- 자격증반, 자기계발 등 진로프로그램
- 문화체험, 아웃리치 등 활동지원프로그램
- 상담 및 복지지원프로그램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상담, 교육, 활동 등)

□ **관련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운영목적**

-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 학업,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12월
- 지원대상: 만 9~24세 이하 청소년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지원내용(생활·건강·학업·상담·법률지원 등)
 - 기초생계비, 건강검진 및 치료비, 검정고시 학원비, 직업훈련비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피해학대 아동을 위한 소송비 등
- 사업비: 59,028천원(기금70, 시비30)

□ **추진절차**

- 대상자 발굴(행정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재산조사(복지정책과)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해당부서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신청	o 신청서 접수	洞행정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
↓ 소득·재산조사	o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정보연계 조사	복지정책과
↓ 심 의 / 결 정	o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대상자 선정 등	체육청소년과
↓ 통 보	o 특별지원대상 최종 통보	체육청소년과
↓ 사후관리	o 상담 및 사례 관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변동관리	o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o 보장 중지(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체육청소년과

8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 청소년팀

☎ 3221

□ 관련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 운영목적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필수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지원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9~24세(2000~2016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25. 1.~12월
- 지원내용: 월 14,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사업비: 421,292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절차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목적

-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사업추진
- 지역주민들과 청소년 간에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성체고와 세대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회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12월
- 사업대상: 11개동(성당, 두류3동, 감삼, 장기, 용산1, 월성1, 월성2, 진천, 도원, 송현2, 본동)
 - ※ 그간 추진사항
 - 2014년(1개동): 이곡1
 - 2015년(3개동): 신당, 월성1, 진천
 - 2016년(6개동): 성당, 본리, 죽전, 용산2, 월성1, 상인3
 - 2017년(7개동): 성당, 감삼, 용산1, 이곡2, 상인1, 상인3, 도원
 - 2018년(9개동): 성당, 감삼, 용산1, 이곡2, 월성1, 상인1, 상인3, 도원, 송현2
 - 2019년(11개동): 성당, 감삼, 용산1, 이곡2, 월성1, 월성2, 상인1, 상인3, 도원, 송현2, 본
 - 2020년(11개동): 성당, 감삼, 용산1, 월성1, 월성2, 진천, 상인1, 상인3, 도원, 송현2, 본
 - 2021년(12개동): 성당, 감삼, 장기, 용산1, 월성1, 월성2, 진천, 상인1, 상인3, 도원, 송현2, 본
 - 2022년(12개동): 성당, 감삼, 장기, 용산1, 월성1, 월성2, 진천, 유천, 상인1, 도원, 송현2, 본
 - 2023년(10개동): 성당, 감삼, 장기, 용산1, 월성1, 월성2, 진천, 도원, 송현2, 본
 - 2024년(10개동): 성당, 감삼, 장기, 용산1, 월성1, 월성2, 진천, 도원, 송현2, 본

주요 사업내용

- 나의 꿈 찾기, 우리마을 기업탐방 등 진로·직업 프로그램
- 우리마을 보안관, 방과후 돌봄 등 안전 및 돌봄 프로그램
- 마을 축제, 텃밭 가꾸기 등 마을주민과 청소년의 소통 프로그램
- 마을탐방, 마을지도 만들기 등 마을의 특성을 활용한 자율 프로그램

제6장 기 타



□ 제도 소개

-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5~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연 12개월 이내(2025.1월부터 지원)
※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다음 달로 이월 또는 현금 인출 불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차: 전국 동시접수(2024.11.8.~11.29.)
-2차: 기초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를 통한 신청
 - 서면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

- 신청 당시 작성한 휴대전화번호로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로그인 ▶ MY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

□ 이용방법

- 카드발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신한체크카드)
 - 신규대상자: 카드신청 안내문자 발송(개별 온라인신청)
 - 기존카드소지자: 신규카드발급 불필요
- 수강신청 및 결제
 - 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 ▶ 시설 및 강좌 검색
 - ② 조회된 시설 및 강좌 조회 후 <대면 강좌보기> 클릭
 - ③ 신청 가능한 강좌 ▶ 수강신청
 - ④ 선택강좌 결제 (온라인 결제만 가능 / 현장 단말기 결제 불가)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1551-0078)

□ 근 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설치 · 운영)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 · 운영)

□ 목 적

-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 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
- 사업내용
 -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대상별(어린이, 노인, 장애인, 조리원 등) 식단관리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정보제공 등
- 운영방법: 민간위탁(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	직원수	전화번호
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층 320호 (연면적 230.06㎡)	2025. 1. 1.~ 2027. 12. 31. (3년)	21명	580-8990

- 등록·관리현황

- 어린이급식소

(단위: 개소, 기준일: 25. 1. 1.)

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등
312	227	45	36	4

- 사회복지급식소

(단위: 개소, 기준일: 25. 1. 1.)

계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재활시설
38	21	15	2

- 예산: 1,061,840천 원(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부 록

- ① 복지대상자 현황
- ② 2025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 ③ 사회복지 시설 현황
- ④ 복지관련 단체 및 위원회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반영)

2. 긴급복지

3. 시민행복 보장제도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5. 장애연금

6. 기초연금

7. 보육료 지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2025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반영)

최종 수정일: 2025. 2. 6

2. 긴급복지

구분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 고
	기금소득기준 (총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6,741,321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긴급지원 생계비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증가
	긴급지원 주거비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재 산 기 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의료지원 300만원 정신과, 재활치료, 안과, 치과, 만성질환지원 제외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해 당 없 음	동절기	10.~3월 기간 동안 연료비(150,000원) 추가 지원					
지 원 내 역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연료비(15만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한도) / 최장횟수 - 생계 6회, 의료 2회, 주거 12개월, 교육 4회							

3. 시민행복 보장제도

구분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 고
선정기준 (중위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급여기준일은 매월 20일, 지급일은 매월 25일
최고급여액		191,370	314,620	420,030	487,830	568,660	645,190	
재산기준(선정제외)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						기초생계급여의 25% 수준의 급여
부양의무자 가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2천만원), 고재산(10억 8천만원)인 경우 제외						

4.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5. 장애연금

구분	기구원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아동수당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증증아동	경증아동	시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재가))	342,510	90,000	432,510	220,000	110,000	증증(90,000) 경증(30,00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최고 342,510	80,000	80,000	170,000	110,000	-	
차상위초과(일반)	최고 342,510	30,000	50,000	-	-	-	
기초공제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2천만원						근로소득 개인별 92만원+30%추가공제
지원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애수당: 6만원, 시설수급자 경증 장애수당: 3만원,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수당: 6만원 • 2010. 7. 1. 당시 65세 이상인 자(1945. 6. 30.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자에 한하여 8만원 지급 •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2010. 6. 30.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5만원 지급						

6. 기초연금

구분	급여액	소득기준		재산기준(주택만 보유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노인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10%~기준연금액 (또는 부가연금액)	월 437만원 이하	월 228만원 이하	대도시	부부가구 1,229,400,000 단독가구 819,000,000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기준연금액 10%~기준연금액 (또는 부가연금액)	홀별이: 월 632만원 이하 맞벌이: 월 745만원 이하	월 364.8만원 이하	중소도시	부부가구 1,179,400,000 단독가구 769,000,000		
노인 부부가구 (부부감액 20%)	기준연금액 20%~기준연금액 (또는 부가연금액)			농어촌	부부가구 1,166,900,000 단독가구 756,500,000		
소득인정액	노인단독세대 228만원, 노인부부세대 364.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기초공제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2천만원 • 근로소득 개인별: 112만원 + 30% 추가공제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 2025년 월 342,510원 부가연금액: 2025년 월 171,250원						

7. 보육료 지원

출생월일	연령	부모보육료 (‘25.3.1.기준)	장애아 보육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아동 가정양육수당		야간연장 보육료
				개월	금액	개월	금액	개월	금액	
2024.1.1. 이후	만0세	540,000								
2023.1.1.~12.31.	만1세	475,000								
2022.1.1.~12.31.	만2세	394,000								
2021.1.1.~12.31.	만3세	280,000								
2020.1.1.~12.31.	만4세	280,000								
2019.1.1.~12.31.	만5세	280,000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100,000	장애인 방과후	293,000							
전계층 지원	•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지급 • 가정양육수당은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까지 소급 신청 가능 • 방과후 장애아보육: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카드 12세이하, 만5세이하 장애 소견 있는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만3세~만5세 미취학 아동 •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법정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587,000	12미만 12이상~ 24미만	1,000,000 500,000	24이상 86미만	100,000	24~35개월 36~86개월 미만	200,000 100,000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240,000원 한도) 장애인아동 시간당 5,000원 (300,000원 한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비 고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재산은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쉽게 되므로 일반재산의 1.5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상기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은 개별 사업별로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으며 변동될 수 있음.	
승용차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	자동차 일반재산 (월 4.17%) 승용차 (월 100%)
	승용(2,000cc미만 - 장애인 사용차량, 생업용, 2,000cc미만 - 질병·부상,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생업용, 11인승 이상), 이륜자동차 260cc이하 차량, 1,000cc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중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유통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예외 사항: 2,000cc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의 이동수단사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제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해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주거·교육급여 자동차 기준은 사업별 지침 참조

달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현황

동행정복지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성당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8(성당동)	053-667-4017
두류1·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길 141-8(두류동)	053-667-4070
두류3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24(두류동)	053-667-4118
본리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14(본리동)	053-667-4150
감삼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길 119-10(감삼동)	053-667-4182
죽전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56길 26(죽전동)	053-667-4204
장기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77(장기동)	053-667-4241
용산1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212-7(용산동)	053-667-4264
용산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78(용산동)	053-667-4307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309(이곡동)	053-667-4333
이곡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77(이곡동)	053-667-4361
신당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60(신당동)	053-667-4401
월성1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5길 5-12(월성동)	053-667-4420
월성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65(월성동)	053-667-4456
진천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9길 33(진천동)	053-667-4479
유천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75(유천동)	053-667-4101
상인1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40(상인동)	053-667-4611
상인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27(상인동)	053-667-4638
상인3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25(상인동)	053-667-4674
도원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53(도원동)	053-667-4705
송현1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8길 41(송현동)	053-667-4733
송현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83길 120-14(송현동)	053-667-4762
본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6길 62(본동)	053-667-4790